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V)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V)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6.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V)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6.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구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6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요 약

1. 제도 운영 현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료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거래금액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은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율인 10/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

〈표 1〉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8.12.28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2005.7.13	○ 중고품 취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조정 - (중고자동차) 108분의 8 → 110분의 10 - (재활용폐자원) 108분의 8
2006.12.30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 조정 -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공제 특례 허용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08분의 8 → 106분의 6 ○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010.1.1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10분의 10 → 109분의 9 - 일몰기한 연장(2009. 12. 31. → 2013. 12. 31.)
2014.1.1	○ 일몰기한 2016년까지 연장(중고자동차는 2014년까지)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05분의 5: 2014. 1. 1. ~ 2015. 12. 31 - 103분의 3: 2016. 1. 1. ~ 2016. 12. 31
2014.12.23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특례 일몰기한 2016년까지 연장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각 연도

<표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요율 변화

연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2004	8/108	8/108
2005~2006	8/108	10/110(2004.10~)
2007~2009	6/106	10/110
2010~2013	6/106	9/109
2014~2015	5/105	9/109
2016	3/103	9/109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110:0>) 2016. 4. 23

- 국세청에 신고된 개별 세무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를 구분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증가가 빠름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숫자는 2009년 4,242개에서 2014년 5,263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조세특례 신고사업자 중 17.7%를 차지

<표 3>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구성

(단위: 개, %)

	합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2009	25,905 (100.0)	4,242 (16.4)	21,663 (83.6)
2011	28,977 (100.0)	4,780 (16.5)	24,197 (83.5)
2013	30,375 (100.0)	5,267 (17.3)	25,108 (82.7)
2014	29,740 (100.0)	5,263 (17.7)	24,477 (82.3)

주: ()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로 측정된 영업마진은 중고자동차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다가 2014년 200억원 흑자로 전환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마진이 과거 지속적인 적자를 보였지만 사업자 규모가 증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높음

-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영업잉여는 2014년 6.1조원 수준

<표 4>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마진

(단위: 십억원, %)

	합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2009	1,701 (100.0)	-1,056 (-62.1)	2,757 (162.1)
2011	3,739 (100.0)	-1,621 (-43.3)	5,360 (143.3)
2013	4,075 (100.0)	-1,193 (-29.3)	5,268 (129.3)
2014	6,097 (100.0)	20 (0.3)	6,077 (99.7)

주: 마진은 매출금액-(부가가치세 신고상)매입금액으로 산출하며 ()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 사업자들의 조세특례대상 재활용품 매입실적은 2010년을 넘어서면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특례대상 사업자 중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매입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다가 2014년 59.5% 수준으로 하락

<표 5>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재활용품 매입액

(단위: 십억원, %)

	합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2009	8,213 (100.0)	2,364 (28.8)	5,850 (71.2)
2011	10,843 (100.0)	2,903 (26.8)	7,941 (73.2)
2013	10,556 (100.0)	2,012 (19.1)	8,544 (80.9)
2014	10,215 (100.0)	4,134 (40.5)	6,081 (59.5)

주: ()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 사업자 유형에 따른 증빙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과세사업자와 거래가능성이 높은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거래비중이 그렇지 않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거래비중보다 높음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경우 증빙거래 즉 세금계산서 거래비중이 공제율이 인하된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2009년 11.1%에서 2011년 6.3%로 하락
- 재활용폐자원사업자 역시 2014년 세액공제율이 인하됨에 따라 증빙거래 비중이 이전의 3.2%(2013)에서 1.8%(2014)로 하락
- 시장구조의 변화, 세액공제율 하락에 따른 이익보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수 있음

<표 6> 사업자유형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유형

(단위: 십억원, %)

	중고자동차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합계	영수증	세금계산서	합계	영수증	세금계산서
2009	2,356 (100.0)	2,096 (88.9)	261 (11.1)	5,739 (100.0)	5,688 (99.1)	51 (0.9)
2011	2,889 (100.0)	2,707 (93.7)	183 (6.3)	7,808 (100.0)	7,660 (98.1)	149 (1.9)
2013	2,006 (100.0)	1,732 (86.4)	274 (13.6)	8,537 (100.0)	8,268 (96.8)	269 (3.2)
2014	4,125 (100.0)	3,669 (88.9)	457 (11.1)	6,070 (100.0)	5,958 (98.2)	112 (1.8)

주: 실효 매입세액 공제율은 세액공제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 한편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유럽국가와 싱가포르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운영 중
 -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은 대부분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따르고 있어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마진과세제도가 매우 유사
 - 마진에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 마진과세를 적용하는 EU국가들은 마진과세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이나 손실 계상을 막기 위해 엄격한 거래증빙 요구 등 조치를 시행
- 반면, 스위스, 호주 및 뉴질랜드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운영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매입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

4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외국의 사례는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중고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마진과세의 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강화된 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를 마진과세 선택자에게 부과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는 반면
- 우리나라는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해소되지 않아 이로 인한 과세기반 누수를 정상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완

<표 7>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 비교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부동산)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0A조	부가가치세법 제25A조	조세일반법 제297A조~ 제297F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75장
적용대상 재화	중고품·예술품·수집품·골동품			중고품	과세대상 부동산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text{부가가치세} = \text{마진} \times \text{부가가치세율} / (1 + \text{부가가치세율})$ $\text{마진} = \text{판매가격} - \text{취득가격}$ (호주의 경우 마진 = 부동산의 처분가액 - 취득가액)				
공제비율 (부가세율)	1/6 (20%)	19/119 (19%)	19.6/119.6 (19.6%)	7/107 (7%)	1/11 (10%)
개별자산에 대한 손실상계	불가				
포괄적 마진과세제도	허용(재화당 매입가격이 500파운드 이하인 경우)	허용(총매입가격이 500유로 이상인 경우)	허용	허용	규정 없음
포괄적마진과세제도하에서 손실이월	이월 가능 (환급은 불가능)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	불가				

주: 1. 호주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중고품 등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싱가포르와 비교가 적절하지 아니하나, 참고 목적으로 추가함
 2.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마진과세제도 규정은 모두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근간으로 하므로 제도의 내용이 대체로 유사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2012

2. 타당성 평가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논리적 문제점은 없음
 - 유럽 등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마진과세를 통해 매입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료작성 요건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 완화조치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거래 불투명성으로 인한 거래 왜곡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

- 부가적으로 재활용 활성화라는 목적도 정부 개입의 이유로 타당성 있음
 - 실제 폐지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매립·소각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됨
 - 재활용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매립·소각되는 폐자원의 양을 줄이고 자원소비를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유발
 - 구체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은 오염 배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배출·수거 및 폐기비용을 대체하는 효과 유발

- 정부의 시장개입 방법의 타당성은 수단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정책수단의 선택 측면에서 거래구조의 특수성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제상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이용하는 방식은 적절
 - 현행 부가가치세제 구조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를 특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해소하고 있기 때문
 -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은 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포괄범위에 있어 중고품과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그 필요성이 중간 정도로 판단 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필요성은 필수 서비스인 음식관련 서비스와 자원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환경보호와 기존 쓰레기 관련 비용의 대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높은 분야
-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허용분야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8> 재화별 의제매입세액공제 필요성

	중고품·폐자원	면세 예술품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	○
공제율	중고자동차: 9/109 재활용폐자원: 3/103	-	음식업: 4/104(유흥) 6/106(일반) 8/108(개인사업자) 제조업(중소기업, 개인) : 4/104 기타: 2/102
지원 필요성	중고자동차: 중 재활용폐자원: 상	면세예술품: 중하	음식업: 상 제조업: 중 기타: 중하

주: 면세 예술품에서 골동품은 제외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4. 24 접속)

- 한편 EU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은 ① 우리나라 상황에의 부합성, ② 전환과정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기상조로 판단됨
 - 먼저 다양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중에서 중고자동차만 전환하여 정상요율을 적용하기에는 형평성과 부가세 행정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 거래투명성이 낮은 상태에서 마진과세 전환이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고 현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
 - 또한 제도 전환과정에서 두 가지 제도 유지를 위한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이용함에 따른 거래 투명성 저하도 심각해질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결정은 매입 재화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정도와 함께 해당 재화의 거래 불투명성으로 인한 세수손실 가능성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없음
 - 이는 향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논의에 있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
-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현재 부가가치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허용과 유사한 재정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복성은 낮음
 - 조세지출 역시 유사한 목적의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효과성 평가

- 향후 매입세액공제율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례규모를 추정하였는데 3개의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1(현행수준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의 추정액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요율 인하로 인해 2015년 2,652억원에서 2019년 1,145억원으로 대폭 축소됨
 - 중고자동차의 경우 2015년 3,841억원에서 2019년 6,037억원으로 증가
 - 시나리오2(2007~09년 수준으로 상향)에 따른 매입세액 추정액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2019년 2,225억원, 중고자동차의 경우 6,647억원으로 시나리오1보다는 양 부문 모두 증가
 - 시나리오3(재활용폐자원은 2007-09년 수준 상향 + 중고자동차는 현행유지)의 매입세액 추정액은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의 복합적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표 9> 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1	현행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하여 연장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9/109)
시나리오 2	2007~2009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연장 (재활용폐자원: 6/106, 중고자동차: 10/110)
시나리오 3	폐자원 활용은 상향조정 + 중고자동차는 현행 유지 (재활용폐자원: 2015~16년은 3/103, 2016년 이후 6/106 중고자동차: 9/109)

<표 10> 시나리오별 세수규모 추정

(단위: 억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A) 시나리오 1					
재활용폐자원	2,652	1,486	1,362	1,249	1,145
중고자동차	3,841	4,301	4,816	5,392	6,037
합계	6,494	5,787	6,178	6,641	7,182
(B) 시나리오 2					
재활용폐자원	2,652	1,486	2,647	2,427	2,225
중고자동차	3,841	4,301	5,302	5,937	6,647
합계	6,494	5,787	7,949	8,363	8,872
(C) 시나리오 3					
재활용폐자원	2,652	1,486	2,647	2,427	2,225
중고자동차	3,841	4,301	4,816	5,392	6,037
합계	6,494	5,787	7,463	7,819	8,262

□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특례제도 운영 시와 폐지 후 세입을 정부지출로 전환하였을 때 경제적 효과를 분석

- 재활용폐자원 활용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활용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128,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54,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9.58명(10억원당)로 이중 생산유발 측면에서 동 특례제도는 그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임
- 생산유발효과는 매입세액공제 방식이 우위에 있는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정부 지출방식이 우위에 있음
 -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특례제도의 유지가 정부소비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만 정부투자지출보다는 덜 효과적이며,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특례제도의 유지가 정부투자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보다는 덜 효과적이며,
 -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는 특례제도보다는 정부지출 효과가 더 우위

<표 11> 재활용폐자원서비스 분야의 유발계수 종합

분야	유발계수		
	생산	부가가치	취업
(A) 재활용서비스 분야	1.9128	0.754	9.5728
(B) 정부소비지출	1.4956	0.8641	15.3472
(C) 정부투자지출	2.1467	0.7178	13.4459
(D) 정부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	1.6381	0.8321	14.9312

주: 1. 이들 유발계수들은 <표 IV-23~IV-25>의 마지막 행을 재배열한 것임.
 2. 취업유발계수는 해당산업 최종수요 혹은 정부지출 10억원 증가 시 취업유발인원을 의미함.

- 조세특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조세특례 대신 세수로 환수되어 정부지출로 사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동등화시켜주는 조세수입 환수비율은 62~91% 수준으로 나타남
- 즉 조세특례제도의 폐지 이후 추가되는 경제적 비용(예: 거래 투명성 하락 등)이 9~38% 수준에 이른다면 조세특례제도 유지와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임

<표 12> 분야별 유발계수와 조세수입 환수비율

(단위: %)

분야	조세수입 환수비율 (1 - κ)		
	생산	부가가치	취업
정부소비지출	-	87.3	62.4
정부투자지출	89.1	-	71.2
정부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	-	90.6	64.1

주: - 부분은 정부지출을 통한 유발효과보다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유발효과가 더 큰 경우임.

4. 결론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타당성 존재
- 유럽 등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마진과세를 통해 엄격한 자료작성 요건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다만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특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의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이기에 때문에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 완화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재활용 활성화라는 부차적인 목적도 정부 개입의 목적으로 타당성 존재
 - 폐자원의 재활용은 오염 배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배출·수거 및 폐기비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

□ 매입세액공제율은 물품의 거래 투명성과 연계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효율 변화 검토 필요시에는 거래 투명성의 변화 추이를 반영할 필요

- 현재 모든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효율인 10/110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와 동일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정상효율 적용 가능
 - 현재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검토 필요
- 다만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쓰레기수거비용과의 대체성,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필요성 등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효율을 결정할 필요

□ 대부분 폐자원의 재활용률 또는 재활용률 증감률과 가격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특례를 통한 가격지원이 폐자원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움

- 또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실제 매입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보다는 매입자의 수익을 높이는 역할만 하였을 가능성 높음¹⁾
- 또한 매입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가능성은 낮은 소매가격으로 인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특례제도 운영 시와 폐지 후 세입을 정부지출로 전환하였을 때 경제적 효과를 분석

- 재활용폐자원 활용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활용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128,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54, 그리고 취업유발

1) 사업자 심층인터뷰에서 확인

계수는 9.58명(10억원당)로 이중 생산유발 측면에서 동 특례제도는 그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임

- 생산유발효과는 매입세액공제 방식이 우위에 있는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정부지출방식이 우위에 있음
 -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특례제도의 유지가 정부소비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만 정부투자지출보다는 덜 효과적이며,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특례제도의 유지가 정부투자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보다는 덜 효과적이며,
 -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는 특례제도보다는 정부지출 효과가 더 우위
- 조세특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조세특례 대신 세수로 환수되어 정부지출로 사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동등화시켜주는 조세수입 환수비율은 62~91% 수준으로 나타남
 - 즉 조세특례제도의 폐지 이후 추가되는 경제적 비용(예: 거래 투명성 하락 등)이 9~38% 수준에 이른다면 조세특례제도 유지와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임

□ 동 제도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은 거래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허용이 불가능

-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필요
- 중고자동차는 거래과약 시스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거래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재 부동산 거래와 같이 계약서 제출의무를 통해 정상신고 유인 제고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기존의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성과를 검토하여 가능한 품목에 대해 확대를 검토

□ 한편 EU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은 ① 우리나라 상황과의 부합성, ② 전환과정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기상조로 판단됨

- 먼저 다양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중에서 중고자동차만 전환하여 정상요율을 적용하기에는 형평성과 부가세 행정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 거래 투명성이 낮은 상태에서 마진과세로의 전환이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고 현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
 - 또한 제도 전환과정에서 두가지 제도 유지를 위한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이용함에 따른 거래 투명성 저하도 심각해질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매입세액 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있고 정책수단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경제성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에는 제도 변경보다 거래 투명성 제고 조치를 먼저 추진할 필요
 -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전등록 시점에서 거래계약서와 함께 실거래가를 제출토록 강제할 필요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매입자납부제도의 성과를 검토하여 가능한 품목에 대해 확대 검토
 - 따라서 공제요율 수준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며 향후 거래 투명화 개선정도, 폐자원의 경우 쓰레기 수거비용의 대체효과 등을 반영할 필요

목 차

I. 서 론	21
II.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사례	25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제도 운영 현황	27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27
나. 제도 운영 현황	30
2. 주요 선진국의 중고품 관련 부가가치세 지원 제도	43
가. 유럽연합(EU)	43
나. 영국	47
다. 독일	54
라. 프랑스	56
마. 싱가포르	58
바. 스위스	59
사. 호주	60
아. 뉴질랜드	63
자. 일본	64
차. 소결	65
III. 타당성 평가	69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71
2. 수행방법의 타당성	75
가.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과의 연관성	77
나. 폐자원 거래 투명성과의 연관성	82
다. 마진과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83
3.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정성	86
4. 다른 재정사업 등과의 중복성	90

IV. 효과성 평가	93
1.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정도	95
가. 폐기물 재활용률 일반 현황	95
나. 매출 규모별 재활용폐자원 현황	97
다. 폐기물 재활용률과 가격의 상관관계	104
2. 정부재정에의 영향	109
가. 조세지출 규모	109
나. 매입세액 공제율 변화에 따른 정부재정 영향 추정	110
3. 경제적 파급효과	113
가.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투입-산출 분석	114
나. 분석결과	118
V. 결 론	127
참고문헌	133
<부 록> 재활용폐자원 등 사업자 FGI 결과	135

표 목 차

<표 II-1>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연혁	29
<표 II-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요율 변화	29
<표 II-3>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구성	35
<표 II-4>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마진	36
<표 II-5>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재활용품 매입액	36
<표 II-6> 사업자유형별 실효매입세액 공제율	37
<표 II-7> 사업자유형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유형	38
<표 II-8> 중고품 등의 매입 시 매입계산서·재고장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50
<표 II-9> 중고품 등의 매출 시 매출계산서·재고장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51
<표 II-10> 재고장부 예시	51
<표 II-11> 포괄적 마진과세제도 적용 예시	53
<표 II-12>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 비교	67
<표 II-13>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 비교	68
<표 III-1> 재화별 의제매입세액공제	76
<표 III-2> 개인 중고자동차 매입 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사례	78
<표 III-3> 중고차 당사자거래 비중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영향	80
<표 III-4> 폐자원(고철)의 무자료거래 발생원인	84
<표 III-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율의 개선방향	90
<표 III-6> 재활용품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격차	91
<표 IV-1> 국내 폐자원 사용량 및 증감률 추이	96
<표 IV-2> 국내 폐자원 이용률 및 증감률 추이	97
<표 IV-3> 업종별-규모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사업자 현황(평균)	98
<표 IV-4>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매출규모별 사업자 구성	99
<표 IV-5>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100

<표 IV-6>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입금액 ...	101
<표 IV-7>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입세액공제액	102
<표 IV-8>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 현황(전체)	103
<표 IV-9> 폐지 사용량 및 가격의 추이와 상관계수	105
<표 IV-10> 철스크랩 사용량 및 가격의 추이와 상관계수	106
<표 IV-11> 폐철캔 사용량 및 가격의 추이와 상관계수	107
<표 IV-12> 폐유리 사용량 및 가격의 추이와 상관계수	108
<표 IV-13> 재활용 사용과 가격과의 상관계수 종합	109
<표 IV-14> 최근 5년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합계	110
<표 IV-15> 재활용폐자원금액에 대한 2009-14년 증감률	110
<표 IV-16> 재활용폐자원금액에 대한 추정액(2015~19년)	111
<표 IV-17> 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	112
<표 IV-18> 시나리오별 세수규모 추정	112
<표 IV-19> 투입산출표의 형식(기초가격 기준)	115
<표 IV-20> 재활용산업 GDP, 증가율, 비중 추이(2000~15년)	119
<표 IV-21> 재활용폐자원서비스 분야의 유발계수 종합	120
<표 IV-22> 분야별 유발계수와 조세수입 환수비율	122
<표 IV-23> 재활용폐자원서비스 분야의 유발계수	123
<표 IV-24>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124
<표 IV-25>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125

그림 목 차

[그림 II-1]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고 사업자 수	30
[그림 II-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모	31
[그림 II-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 매입 과세표준	31
[그림 II-4] 사업자당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액	33
[그림 II-5] 사업자당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액(과세표준) 변화	33
[그림 II-6] 법정 매입세액 공제율과 실효공제율	34
[그림 II-7] 자동차 이전등록의 유형별 변화	39
[그림 II-8] 재활용폐자원의 가격추이	40
[그림 II-9] 폐지 가격과 재활용률	41
[그림 II-10] 고철 가격과 재활용률	41
[그림 II-11] 철캔 가격과 재활용률	42
[그림 II-12] 폐유리병 가격과 재활용률	42
[그림 III-1] 중고자동차와 폐자원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증빙거래 비중	73
[그림 III-2] 폐자원의 이용률과 매입세액 공제율 변화	74
[그림 III-3] 거래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77
[그림 III-4] 매입세액공제율 변화 전후의 중고자동차 매매 패턴 변화	79
[그림 III-5]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영업 실태	81

I. 서론



I. 서론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개인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정해주기 위한 제도
 - 부차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제조·가공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투명성과 이로 인한 세수손실을 통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10% 매입세액공제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연관된 과제
 - 국정과제 96번: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중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선진국 수준의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 자원순환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및 폐냉매 적정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2013)
 -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액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몰 제도를 운용 중
 -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 부가가치세제의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 제도를 규정한 것은 조세특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당해 일몰되는 조세특례제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국정과제 40번: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중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일몰 도래 시 원칙대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서 도입토록 함
 - 이를 위해 2014년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상세 운영방안을 규정한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공포
 - 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
 -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평가된 심층평가 결과는 회계개시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

- 2016년 일몰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는 2015년 추정 조세지출 규모 5,780억원으로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
 - 본 연구는 심층평가를 통해 정부의 일몰 이후 제도 조정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함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사례



II.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사례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제도 운영 현황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2)에서 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료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당사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면세사업자·비영리단체 등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됨
 -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거래금액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은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율인 10/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대상자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한정

2)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두 가지 유형의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일반과세자에 한함
- 구체적으로 매입세액 특례대상 사업자는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
 -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폐자원, 중고자동차 등을 공급하는 자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 다음으로 구성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개인·면세사업자·비영리단체·폐업한 사업자 등
 - 간이과세자
- 조세감면액은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적용
 -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한도는 당해 매출세액의 80%로 설정하여 특례로 인한 지나친 세입감소 가능성에 대비
 -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취득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의 경우 9/109
 -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금속캔, 폐합성고무,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폐의류), 폐유(폐식용유 포함)
 - 다만 폐목재, 폐건축자재, 폐бат데리, 폐합성섬유, 폐양초, 중고 가전제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 공제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표 II -1>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8.12.28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2005.7.13	○ 중고품 취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조정 - (중고자동차) 108분의 8 → 110분의 10 - (재활용폐자원) 108분의 8
2006.12.30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 조정 -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공제 특례 허용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08분의 8 → 106분의 6 ○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010.1.1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10분의 10 → 109분의 9 - 일몰기한 연장(2009. 12. 31. → 2013. 12. 31.)
2014.1.1	○ 일몰기한 2016년까지 연장(중고자동차는 2014년까지)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05분의 5: 2014. 1. 1. ~ 2015. 12. 31 - 103분의 3: 2016. 1. 1. ~ 2016. 12. 31
2014.12.23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특례 일몰기한 2016년까지 연장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각 연도

<표 II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요율 변화

연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2004	8/108	8/108
2005~2006	8/108	10/110(2004.10~)
2007~2009	6/106	10/110
2010~2013	6/106	9/109
2014~2015	5/105	9/109
2016	3/103	9/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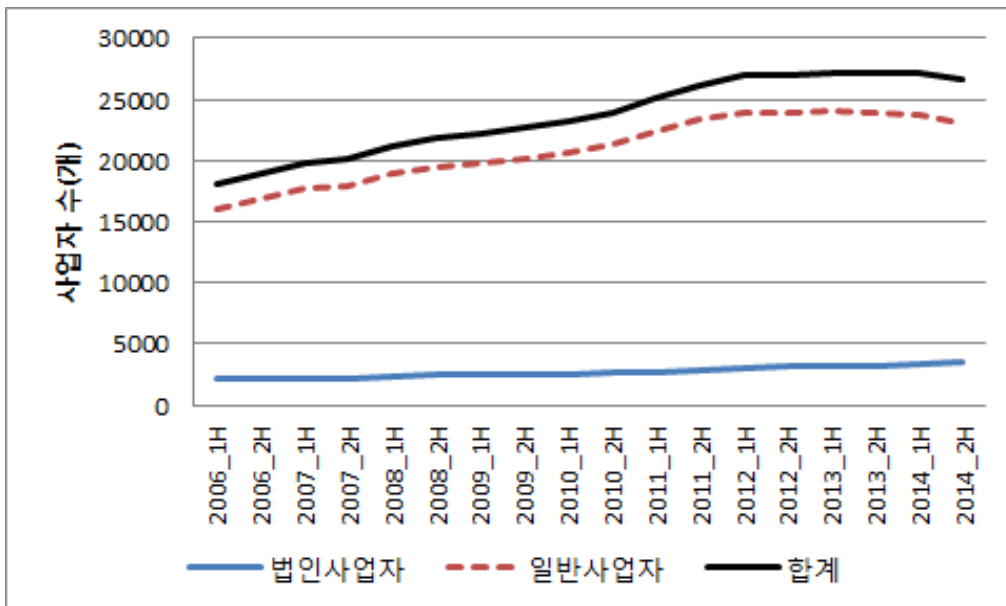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110:0>) 2016. 4. 23 접속

나. 제도 운영 현황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활용한 사업자 규모는 2006년 상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상·하반기 2,7177개에 달하였다가 소폭 감소하여 2014년 하반기에는 26,549개 수준
- 대규모 법인사업체의 경우 2014년 하반기 3,459개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자는 2013년 상반기 23,976개에서 하락추세로 반전하여 2014년 하반기에는 23,090개로 하락

[그림 II -1]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신고 사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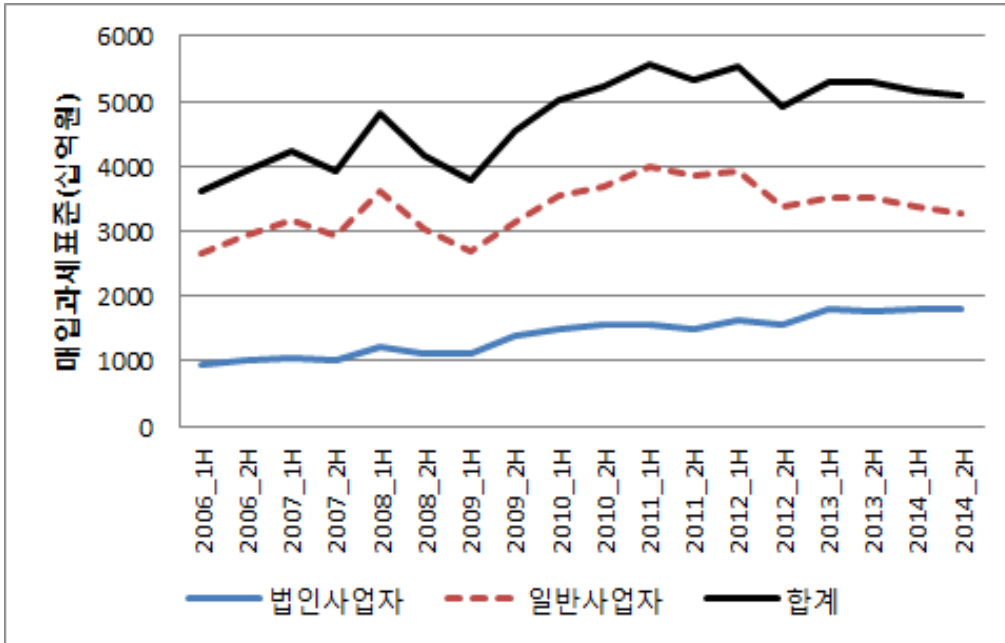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모는 사업자 수의 변화추세와 달리 경제위기와 함께 소폭 하락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법인사업자의 비중도 높음
- 매입세액공제 특례규모는 2006년 상반기 약 2,810억원 수준에서 경제위기 기간 약 2,550억원(2007년 하반기)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 하반기에는 3,130억원 수준까지 회복
 - 최근의 변화추세는 2012~2013년 기간에 최고수준을 보였다가 2014년에 하락
 - 사업자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법인사업자 특례규모는 꾸준히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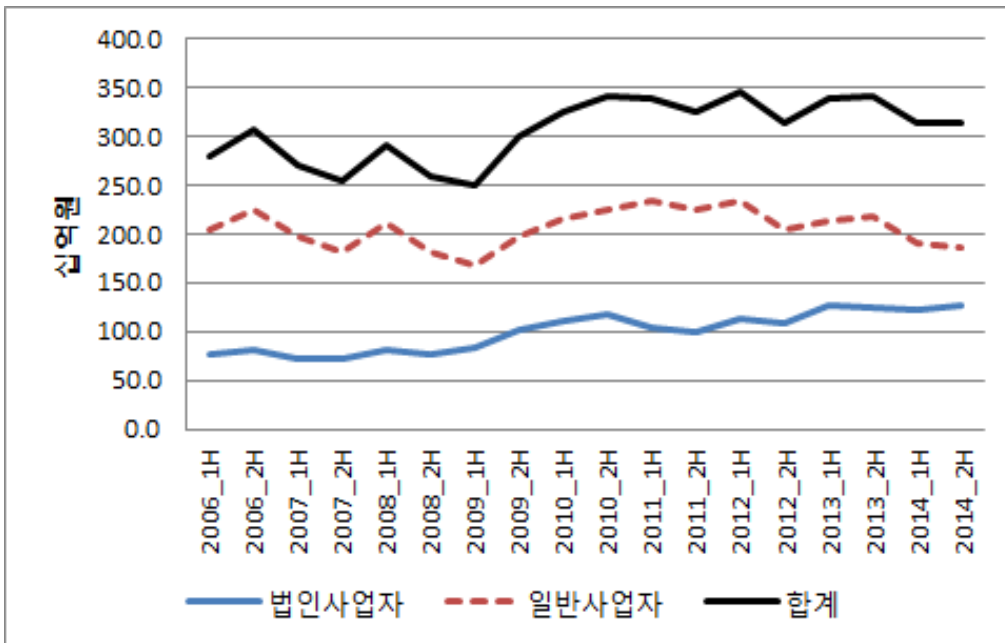
- 가추세인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사업자의 특례규모는 빠르게 감소 중
- 일반사업자의 특례규모는 2011년 상반기 2,340억원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4년 하반기에는 1,870억원 수준

[그림 II -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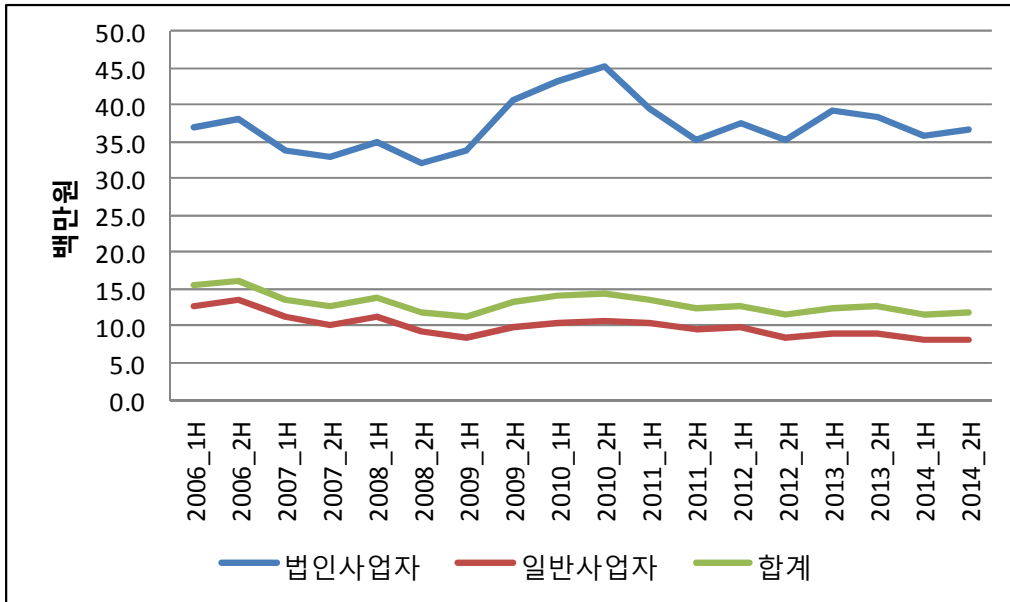
[그림 II -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 매입 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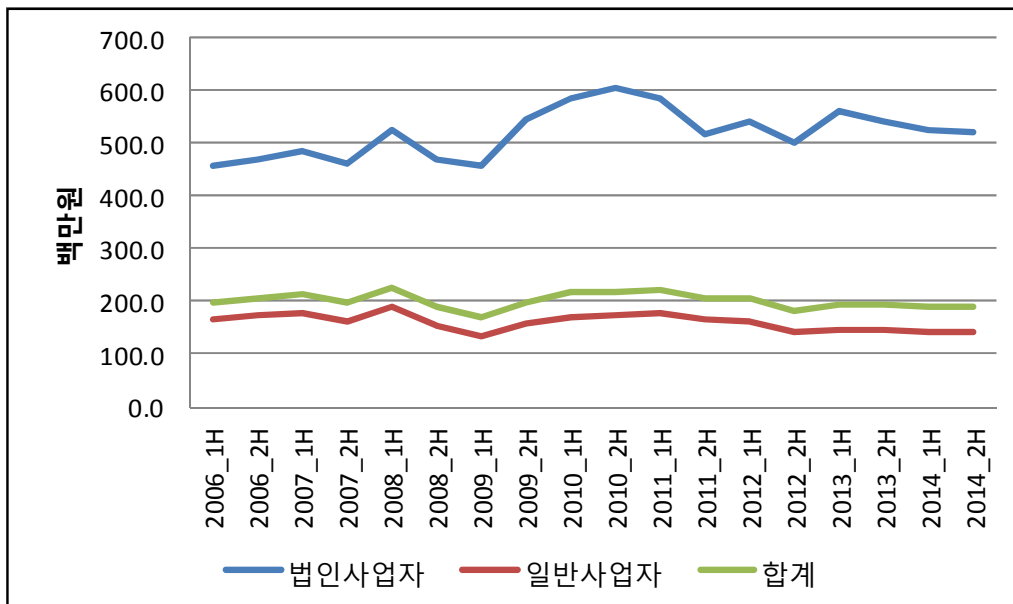
- 매입세액공제 특례 중에서 법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상반기 27.2%에서 2014년 하반기 40.3% 수준으로 증가
 - 시장이 대규모 법인사업자 중심으로 변화 중임을 시사
 - 매입과세표준의 변화와 분포도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모와 유사한 변화추세를 보이나 재활용폐기물과 중고자동차의 비중 변화에 따라 차이도 존재
- 사업자당 매입세액 공제 금액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
- 2006년 상반기 사업자당 세액공제 금액은 15.5백만원 수준에서 2014년 하반기에는 11.8백만원으로 하락
 - 그러나 사업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인사업자의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36백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 일반사업자의 평균 세액공제 규모는 2006년 상반기 12.7백만원에서 2014년 하반기 8.1백만원으로 크게 하락
 -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
 - 평균 세액공제 규모 하락에는 2010년 중고자동차, 2014년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영여건 악화는 전반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제도권 밖으로의 거래, 즉 개인 간의 거래를 촉진시킬 가능성 높임
 - 중고자동차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회피하고 개인 간 거래로 전환할 유인이 상승
- 사업자당 매입과세표준 규모는 공제액 변화추세와 달리 2006년 이후 약 2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소폭 증가하며 일반사업자의 매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법인사업자의 평균 매입과세표준은 4.6억원(2006년 상반기)에서 5.2억원(2014년 하반기)로 증가하였으나 일반사업자는 1.7억원에서 1.4억원으로 감소
 - 매입과세표준 규모는 전반적인 사업 활동규모를 나타내는데 분석기간 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이 하락한 것
 - 2006년 대비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8%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 활동규모는 축소된 것이거나
 - 세무신고에 포함되는 거래규모 자체를 누락하였을 수 있음

[그림 II -4] 사업자당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5] 사업자당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액(과세표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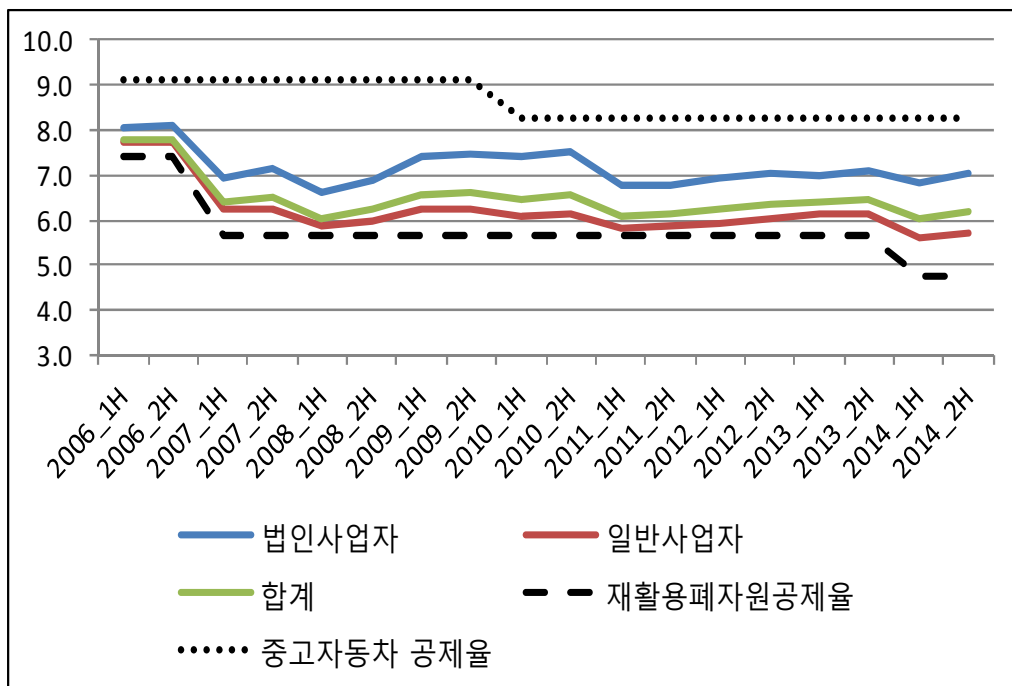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사업자 유형별 실효공제율(세액공제/매입과세표준)은 법정공제율과 재활용폐자원 과 중고자동차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정공제율 인하에 따라 하락 추세
- 실효공제율은 2006년 상반기 7.8% 수준에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공제율이 인하된 2007년 상반기 6.4%로 하락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6.1% 수준으로 하락

-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구분할 경우 법인사업자의 실효공제율이 높아 중고자동차 거래사업자가 주로 법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됨을 반영
 - 실효공제율이 하락한 시점은 실제 법정공제율 하락 시점
- 특이점은 2010년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율 인하(10/110 → 9/109)에도 불구하고 실효공제율 인하 추세는 두드러지지 않음
- 실제 실효공제율 인하는 1년 후인 2011년 상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법률조항 개정에 대한 매입행태 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즉 매입세액공제율이 낮아짐을 고려하여 매입시기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
 - 다만 실제 중고자동차 매입과 매출의 시간 차이는 평균 5개월 정도³⁾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가까운 거래량을 미리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II -6] 법정 매입세액 공제율과 실효공제율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2016년 4월 15일 중고자동차 사업자 심층면접 결과

- 국세청에 신고된 개별 세무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 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를 구분⁴⁾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증가가 빠름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수는 2009년 4,242개에서 2014년 5,263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조세특례 신고사업자 중 17.7%를 차지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증가에는 중고자동차 수출 수요 등 외부수요의 증가와 함께 시장 투명성이 낮아 부가가치세부담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이 진입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표 II -3〉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구성

(단위: 개, %)

	합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2009	25,905 (100.0)	4,242 (16.4)	21,663 (83.6)
2011	28,977 (100.0)	4,780 (16.5)	24,197 (83.5)
2013	30,375 (100.0)	5,267 (17.3)	25,108 (82.7)
2014	29,740 (100.0)	5,263 (17.7)	24,477 (82.3)

주: ()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로 측정한 영업마진은 중고자동차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다가 2014년 200억원 흑자로 전환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마진이 과거 지속적인 적자를 보였지만 사업자 규모가 증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높음
 - 시장에서 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업자규모가 늘어났다면 정상적인 사업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적절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 가능
 -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영업잉여는 2014년 6.1조원 수준

4) 신고서식상 나타나는 “종목”항목을 기준으로 분류

〈표 II -4〉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마진

(단위: 십억원, %)

	합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2009	1,701 (100.0)	-1,056 (-62.1)	2,757 (162.1)
2011	3,739 (100.0)	-1,621 (-43.3)	5,360 (143.3)
2013	4,075 (100.0)	-1,193 (-29.3)	5,268 (129.3)
2014	6,097 (100.0)	20 (0.3)	6,077 (99.7)

주: 마진은 매출금액-(부가가치세 신고상)매입금액으로 산출하며 ()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 사업자들의 조세특례대상 재활용품 매입실적은 2010년을 넘어서면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2011년 10.8조원 수준에서 2014년 기준 10.2조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
 - 특례대상 사업자중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매입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다가 2014년 59.5% 수준으로 하락
 -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매입액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데 2013년까지 2~3조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4.1조원 수준으로 큰 폭 증가

〈표 II -5〉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재활용품 매입액

(단위: 십억원, %)

	합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2009	8,213 (100.0)	2,364 (28.8)	5,850 (71.2)
2011	10,843 (100.0)	2,903 (26.8)	7,941 (73.2)
2013	10,556 (100.0)	2,012 (19.1)	8,544 (80.9)
2014	10,215 (100.0)	4,134 (40.5)	6,081 (59.5)

주: ()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 실효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별 명목세액공제율의 변화를 잘 표현
- 2010년부터 세액공제율이 10/110에서 9/109로 9.2% 낮아진 중고자동차사업자의

경우 2011년 실효공제율이 8.17%로 2009년의 8.98%에 비해 9.0% 하락하여 유사한 변화를 보임

- 실효공제율은 매입세액공제액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액으로 나눈 것
- 반면 2014년 세액공제율이 6/106에서 5/105로 15.9% 낮아진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실효공제율은 2013년 6.03%에서 2014년 4.73%로 21.6% 낮아짐
- 이는 2013년의 세액공제율(6.03%)이 정상적 공제율 6/106(즉 5.66%)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2014년에는 명목공제율 5/105(4.76%)와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

<표 II -6> 사업자유형별 실효매입세액 공제율

(단위: %)

	합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2009	6.61	8.98	5.66
2011	6.11	8.17	5.36
2013	6.45	8.20	6.03
2014	6.12	8.17	4.73

주: 실효매입세액 공제율은 세액공제액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액으로 나누어 산출
자료: 국세청

- 사업자 유형에 따른 증빙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과세사업자와 거래 가능성이 높은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거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재활용 폐자원사업자의 거래비중보다 높음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경우 증빙거래 즉 세금계산서 거래비중이 공제율이 인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
 - 2009년 세금계산서 거래비중이 11.1%에서 2011년 6.3%로 하락
 - 이러한 변화는 공제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거래유형의 변화로, 즉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보전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시사
 - 다만 2013년 13.6%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점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것인데, 자동차이전등록 규모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거래의 불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그림 II-7] 참조)

- 재활용폐자원사업자 역시 2014년 세액공제율이 인하됨에 따라 증빙거래 비중이 이전의 3.2%(2013)에서 1.8%(2014)로 하락
 - 업황 악화로 인해 매입금액이 크게 하락한 것도 수익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시킨 요인

〈표 II -7〉 사업자유형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유형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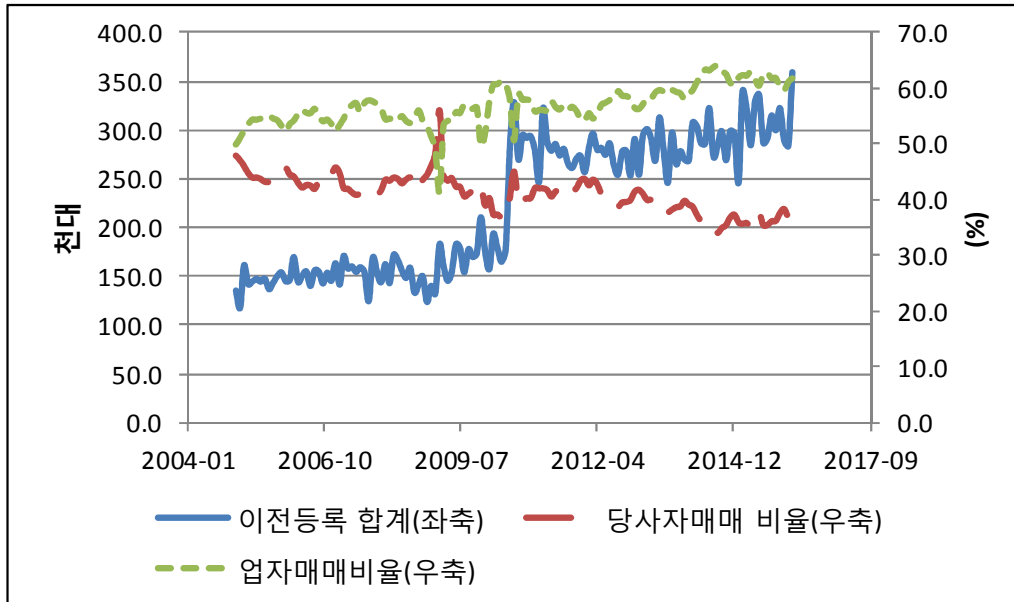
	중고자동차사업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합계	영수증	세금계산서	합계	영수증	세금계산서
2009	2,356 (100.0)	2,096 (88.9)	261 (11.1)	5,739 (100.0)	5,688 (99.1)	51 (0.9)
2011	2,889 (100.0)	2,707 (93.7)	183 (6.3)	7,808 (100.0)	7,660 (98.1)	149 (1.9)
2013	2,006 (100.0)	1,732 (86.4)	274 (13.6)	8,537 (100.0)	8,268 (96.8)	269 (3.2)
2014	4,125 (100.0)	3,669 (88.9)	457 (11.1)	6,070 (100.0)	5,958 (98.2)	112 (1.8)

주: 실효매입세액 공제율은 세액공제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 중고자동차 거래 중 국내거래는 이전등록 통계를 통해 확인 가능
 -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한 단계 높아진 형태
 - 이전의 매월 20만대 이하 규모에서 25만대 이상 규모로 상승
 - 전반적으로 중고자동차사업자를 통한 매매비율이 2000년대 초반 50% 초반에서 2014년에는 60% 이상으로 높아짐
 - 조세지출 측면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거래비중이 증가한 것임
 -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사업자의 비중 증가 추세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사업자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전환시키는 효과⁵⁾를 확인하기 어려움
 - (사례) 중고자동차사업자의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의 차이가 동일하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였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정상부가가치세율의 차이만큼 손실(10% ~ 8.26%)이 발생하여 사업자 간 거래를 회피할 유인 존재

5) 2016년 4월 15일 중고자동차사업자 대상 FGI 등을 통해 제기한 문제

[그림 II -7] 자동차 이전등록의 유형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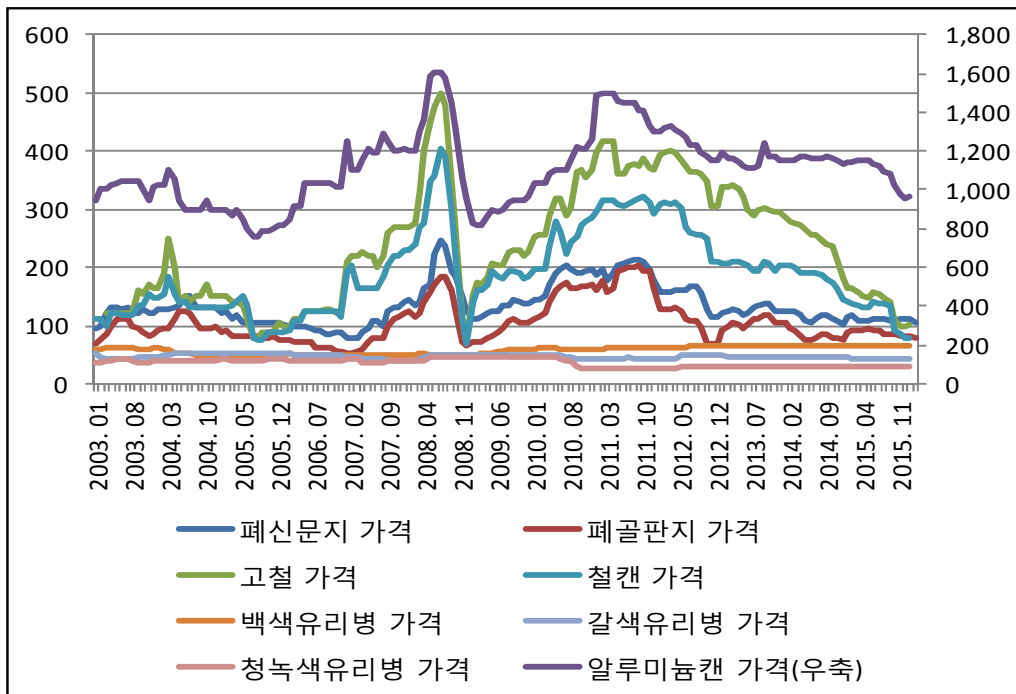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구체적으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체계를 따르기 위한 측면과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
 - 부가가치세 체계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매입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다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기 위하여 특례 허용
 - 폐자원 재활용 촉진이라는 목적은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것
 - 동 특례가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

- 재활용폐자원의 가격 역시 재활용률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재활용폐자원의 가격 상승은 재활용에 따른 기대수익의 향상을 야기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매입가격 하락과 유사한 효과
 - 재활용폐자원의 가격과 재활용율의 상관관계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즉 재활용폐자원의 가격과 재활용률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매입세액공제가 재활용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재활용폐자원의 가격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세계적 금융위기로 급락 후 회복하였다가 다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 상대적으로 큰 가격변동을 보이는 항목은 고철로서 2003년 초 120원/kg 수준에서 2008년 500원/kg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 초에는 103원/kg 수준으로 하락
- 반면 재활용 유리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변화 폭이 작음

[그림 II -8] 재활용폐자원의 가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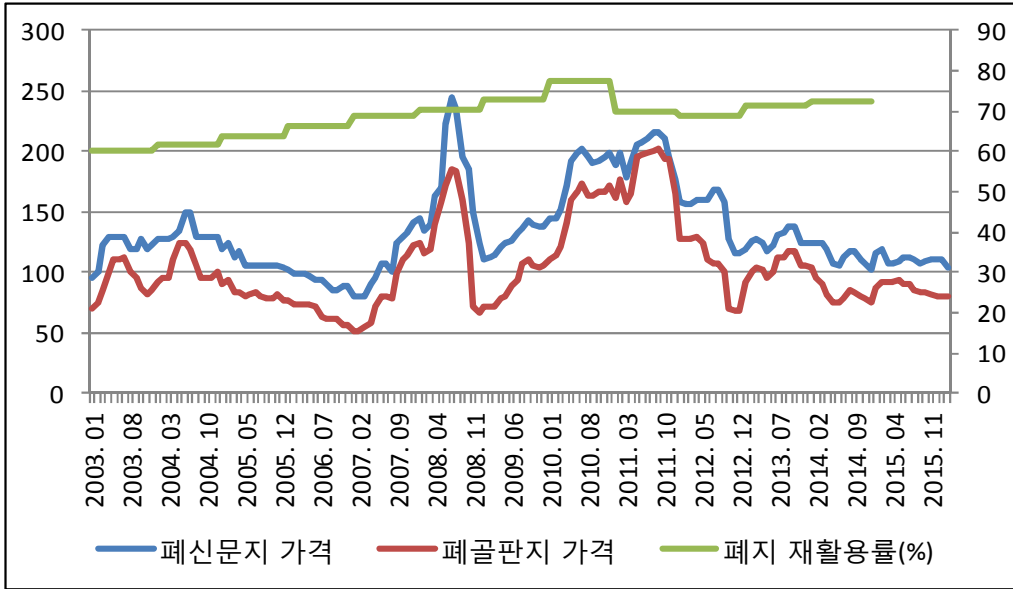


자료: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AA131&conn_path=I3), 2016. 3. 14 추출

- 폐자원의 가격과 재활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폐지의 경우 일정한 관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폐신문지와 폐골판지 가격은 2000년대 이후 등락을 보이지만 폐지 재활용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
 -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폐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소폭 증가하는 상황

[그림 II -9] 폐지 가격과 재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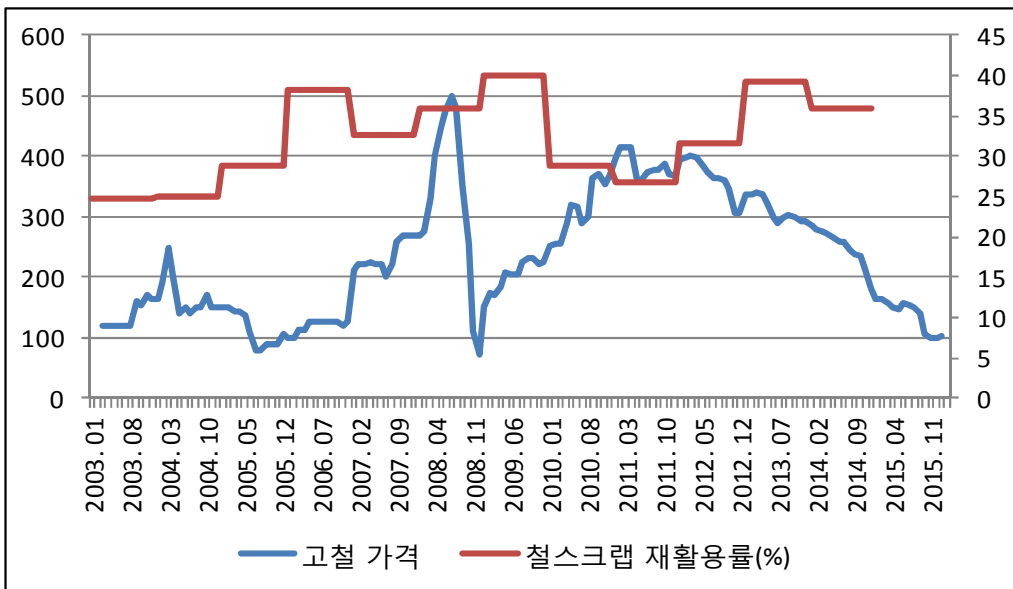
(단위: 원/kg, %)



자료: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AA131&conn_path=I3), 2016. 3. 14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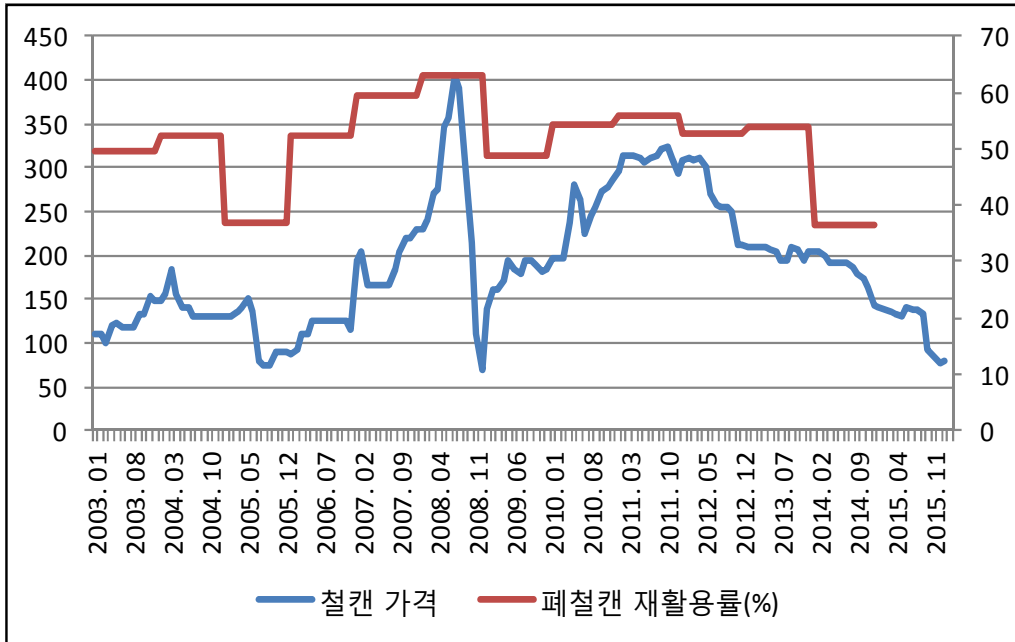
- 고철의 재활용률도 고철가격과의 연관성이 낮음
 - 금융위기 이전에는 가격과 재활용률이 유사한 추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대로 전환
- 반면 철캔의 경우 재활용률은 가격추세와 유사하게 변화
 -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재활용률 역시 상승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

[그림 II -10] 고철 가격과 재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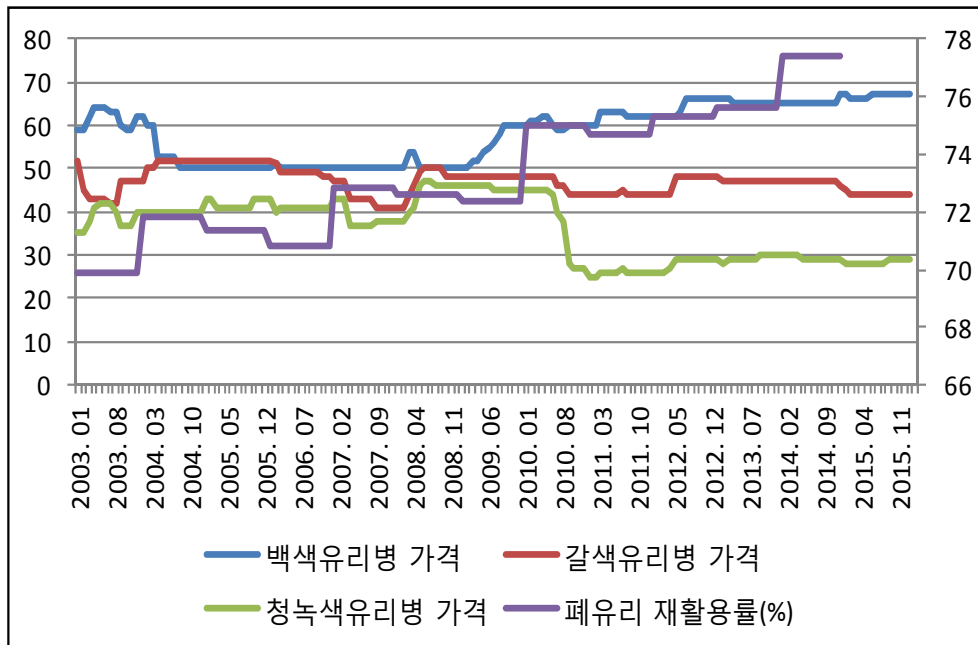
자료: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AA135&conn_path=I3), 2016. 3. 14 추출

[그림 II -11] 철캔 가격과 재활용률



자료: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AA135&conn_path=I3), 2016. 3. 14 추출

[그림 II -12] 폐유리병 가격과 재활용률



자료: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AA134&conn_path=I3), 2016. 3. 14 추출

2. 주요 선진국의 중고품 관련 부가가치세 지원제도⁶⁾

가. 유럽연합(EU)

- EU 회원국들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세금계산서 징수가 어려운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에 대해 ‘마진과세제도(margin scheme)’를 적용
 -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특징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의 예외를 인정
 - 반면, 농어민 사업자에 대해서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근거한 ‘정률보상제도 (flat-rate scheme for farmers)’를 운영함으로써 농어민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보상
 -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의 형태를 취함

- 다만 우리나라에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허용하는 폐자원(폐지 등)은 마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⁷⁾

1) 중고품 마진과세제도의 도입과정

-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EC Directive 77/388/EEC’는 제32조에서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에 대하여 각 EU 회원국별로 특별한 과세 시스템(special system)을 도입할 것을 권고⁸⁾
 - 그러나, 각 EU 회원국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고품 등에 대한 특별 과세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음

- 이에 따라 EU는 1994년 2월 14일 ‘EC Directive 94/5/EC’를 제정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부터 마진과세제도를 도입

6)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한국조세연구원, 2012)의 내용을 요약 및 업데이트

7) 폐자원에 대한 별도의 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진과세대상인 중고품에 포함될 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8) EC Directive 77/388/EEC, Article 32 (Second-hand goods) -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shall adopt before 31 December 1977 a Community taxation system to be applied to used goods, works of art, antiques and collectors' items. Until this Community system becomes applicable, Member States applying a special system to there items at the time this Directive comes into force may retain that system.

- 현재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지침은 ‘EC Directive 2006/112/EC’상의 과세제도

2) 마진과세제도의 내용

- 과세대상 중개업자(taxable dealer)가 중고품(second-hand goods), 예술품(works of art), 수집품(collector's items) 또는 골동품(antiques)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중개업자의 마진(margin)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마진과세제도⁹⁾
 - 여기서 과세대상 중개업자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또는 골동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를 의미¹⁰⁾
- 마진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아래와 같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거래에 적용¹¹⁾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비사업자(non-taxable person)
 - 과세대상 중개업자에게 중고품 등을 공급한 과세사업자(taxable person)로서, 면세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당해 중고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 당해 과세대상 중개업자에게 마진과세제도를 통해 중고품 등을 공급한 또 다른 과세대상 중개업자
- 그 외 다음과 같은 거래에도 마진과세제도 적용 가능¹²⁾
 -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직접 수입한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의 공급거래
 - 예술품의 제작자(creators) 또는 상속인(successors)으로부터 예술품을 공급받은 과세대상 중개업자의 예술품 공급거래
 -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또 다른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예술품의 공급거래로서, 예술품을 공급받을 당시 경감세율(reduced rate)을 적용받은 경우

9)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3.1

10)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1.1(5)

11)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4

12)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6

- 마진과세제도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므로 마진과세제도를 적용 가능한 과세대상 중
개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거나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적용 가능¹³⁾
 - 투명한 거래관행하에서는 마진과세는 전단계매입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와 동
일한 효과
 - 거래관행이 투명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전매입세
액공제방식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 마진과세제도에서는 매입가격을 인정할 적절한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일정 마
진을 적용 등으로 유사하게 세부담 증가
 - 결국 세제상 인정하는 거래의 범위에 차이가 없다면 제도 선택의 결과는 동일

- 마진과세제도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마진은 중고품 등이 판매가액
(selling price)과 매입가액(purchase price)의 차액으로 산정¹⁴⁾
 - 판매가액이란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구성
하는 모든 것을 말함
 - 당해 거래와 직접 관련된 보조금·세금·관세·부담금·고객이 부담하는 부수적
비용(예.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및 보험료 등) 등이 모두 포함¹⁵⁾
 - 다만, 조기지급에 대한 가격할인, 공급시점에 고객에게 주어지는 가격할인 및
리베이트 등은 제외¹⁶⁾
 - 매입가액이란 공급자가 과세대상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구성하는 모든
것¹⁷⁾

- 마진과세제도는 거래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과세기간 단위로 마진과세제도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포괄적 마진
과세제도(global margin scheme)도 허용¹⁸⁾
 - 포괄적 마진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일한 부가가치

13)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9

14)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5

15)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2(1)

16)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79

17)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2(2)

18)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2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해당 과세기간 총판매가액에서 총매입가액을 차감해 산정되는 총마진 금액¹⁹⁾

-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재화를 공급한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본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를 표시할 수 없음²⁰⁾
 - 이는 과세대상 중개업자의 마진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업자는 마진과세제도가 적용된 재화의 취득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됨²¹⁾

- 당연히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마진과세제도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각 방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장부에 별도로 표기²²⁾
 - 장부에 기재할 내용은 각 회원국이 도입한 부가가치세제를 기준

- 각 회원국은 중고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이나 손실을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 마련 가능²³⁾
 - 예를 들면 마진율이 판매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동종업종의 정상마진율을 기준으로 마진을 조정하는 방안 등

3) 정률보상제도

- 정률보상제도란 농어민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기 위해 농어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농산물 등의 매입자 또는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
 -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하나, 정률보상제도는 농어민사업자에게 직접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미가공 농산물 등에 대하여 매입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므로 농어민에게 간접적인 가격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

19)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2

20)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5

21)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3

22)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4

23)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3

- EU는 정률보상제도의 근거규정을 EU Directive 2006/112/EC 제295조(flat-rate scheme for farmers)에 두고 있음
 - 농어민 사업자에 대한 정률보상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농어민은 정률보상제도와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²⁴⁾
 - 농어민사업자(farmer)란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과세사업자(taxable person)를 의미²⁵⁾

- 농어민사업자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가격에 일정 보상률(flat-rate compensation percentage)을 곱하여 보상액을 산정
 - 농어민사업자가 과세사업자(정률보상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에게 공급하는 농산물 등(agricultural products)
 - 농어민사업자가 EU 역내 국가의 비사업자(non-taxable legal persons)에게 공급한 농산물 등으로서, 재화 이동이 완료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 농어민사업자가 과세사업자(정률보상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에게 공급하는 농·어업 관련 용역(agricultural services)

- 각 회원국은 농어민사업자에 대한 보상액을 매입자(customer) 또는 정부(public authorities)가 부담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보상액을 부담한 매입자는 그 보상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나. 영국

- 영국은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7) 제50A조에 따라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적용
 - 농산물 등에 대한 특례제도는 영세율의 적용과 농어민 사업자에 대한 정률보상제도를 운용

-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에 대하여 마진과세제도를 적용

24)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96(3)

25)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 마진과세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납세자는 마진과세제도와 통상적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중 선택 가능
-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본인이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 재화에 대해서는 마진과세 제도를, 나머지 재화에 대해서는 통상적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중고품 마진과세 적용요건

- 마진과세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매입하는 재화가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이어야 함
 - ② 사업자가 재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함
 - ③ 사업자는 마진과세제도에 따라 마진을 계산해야 함
 - ④ 사업자는 마진과세제도에 따라 자료를 기록·보관해야 함

- 사업자가 재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상황이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
 - ① 개인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구입한 경우
 - ② 마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구입한 경우
 -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진과세제도 적용 가능

- 만일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계산서(purchase invoice)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2) 부가가치세 산정

-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중고품 등의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인 마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마진에 부가가치세 분수(VAT fraction)를 곱해 세액을 산정

- 현행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인 20% 세율하에서 VAT fraction은 $1/6(=0.2/(1+0.2))$

마진과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정 예

- 매입가격(a): £1,500
- 판매가격(b): £2,000
- 마진(c= b - a): £500
 - 마진 = (판매가격-매입가격)
- 부가가치세액(d = c × 1/6): £83.33
 - 부가가치세액 = 마진 × 1/6 (VAT fraction)

- 판매가격은 매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
 - 따라서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와 같은 부대비용도 판매가격에 포함
- 매입가격은 중고품 등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모든 금전적 대가로서 매입 시 부담한 부대비용도 매입가격에 포함
 - 그러나 중고품 등의 유지보수비, 보관비, 부품비와 같이 판매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매입가격에서 제외
 - 이러한 비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
- 마진과세제도는 판매가격이 매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3) 자료의 기록·보관

- 마진과세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액보다 낮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자료기록·보관 의무를 요구
 -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자료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기록·보관할 의무
 - 만약 요구된 자료로부터 정확한 마진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판매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중고품 등의 매입 시 매입자로부터 매입계산서(purchase invoice)를 수취하고 재고장부(stock book)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함
- 개인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매입계산서를 직접 작성

<표 II -8> 중고품 등의 매입 시 매입계산서·재고장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구분	기재사항
매입계산서 (purchase invoice)	① 판매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구매자(사업자 본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재고장부와 매입계산서 간 상호참조 방식(예: 재고장부 번호 등) ④ 매입계산서 번호(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략) ⑤ 거래일자 ⑥ 구매재화 내역 ⑦ 총 매입가격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한 경우 다음의 문구 중 해당 문구 기재 - 마진과세제도 - 중고품 또는 - 마진과세제도 - 예술품 또는 - 마진과세제도 - 수집품 및 골동품
재고장부 (stock book)	① 재고번호 ② 매입일 ③ 매입계산서 번호 ④ 매입가격 ⑤ 판매자 성명 ⑥ 매입재고 내역

자료: HMRC, "Notice 718 The VAT Margin Scheme and global accounting," March 20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2012에서 재인용

- 사업자가 중고품 등을 판매할 때에는 매출계산서(sales invoice)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하고 재고장부에 판매한 재화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
- 매출계산서는 마진과세제도하에서 발행되는 계산서로서, 통상적인 부가가치세과세제도하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할 수 없음

<표 II -9> 중고품 등의 매출 시 매출계산서·재고장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구분	기재사항
매출계산서 (sales invoice)	① 판매자(사업자 본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구매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재고장부와 매출계산서 간 상호참조 방식(예: 재고장부 번호 등) ④ 매출계산서 번호 ⑤ 거래일자 ⑥ 구매재화 내역 ⑦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할 수 없음)
재고장부 (stock book)	① 판매일 ② 매출계산서 번호 ③ 판매가격 또는 처분방법 ④ 매입자 성명 ⑤ 마진(판매가격-매입가격) ⑥ 부가가치세(마진×1/6) - 만약 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거나 판매가격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0'으로 기재 ⑦ 다음의 문구 중 해당 문구 기재 - 마진과세제도 - 중고품 또는 - 마진과세제도 - 예술품 또는 - 마진과세제도 - 수집품 및 골동품

주: 만약 매입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거나 판매가격과 같다면 부가가치세는 '0'으로 기재함.

포괄적 마진과세제도(global accounting)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발생한 재화의 손실금액과 이익이 발생한 재화의 마진금액은 상쇄할 수 없음.

자료: HMRC, "Notice 718 The VAT Margin Scheme and global accounting," March 20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2012에서 재인용

<표 II -10> 재고장부 예시

매입내역					
1	2	3	4	5	6
재고번호	매입일	매입계산서 번호	매입가격	판매자 성명	매입재고 내역
100	01/02/08	50	£2,500	Mr. J Smith	자동차
매출 내역					
7	8	9	10	11	12
판매일	판매계산서 번호	구매자 성명	판매가격	마진	부가가치세
31/03/08	150	Mr. F Bloggs	£3,000	£500	£83.33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2012.

- 엄격한 자료 구축 및 보관의무로 인해 마진과세제도가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 재화 및 서비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

4) 포괄적 마진과세제도(global accounting)

- 마진과세제도는 매입 또는 공급되는 재화 건별로 자료를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가의 제품을 다량 거래할 경우에는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 존재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마진과세제도를 운영
- 포괄적 마진과세제도는 재화당 매입가격이 500파운드 이하인 사업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포괄적 마진과세제도와 정상적 부가가치세제 중에서 선택 가능
 - 단, 항공기·보트·선외 엔진이 달린 보트·말·조랑말·자동차·오토바이는 가격과 관계없이 포괄적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 포괄적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총판매가액(total eligible sales)에서 총매입가액(total eligible purchases)을 차감한 총마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
 - 아직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의 매입가격도 총매입가격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해당 재고는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 만약 과세기간 동안 손실(negative margin)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액은 0이며, 손실은 차기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차기 과세기간의 마진 산정 시 고려
 - 손실을 차기 과세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재화의 매입 및 매출기간이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데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정 문제를 해결 가능

- 개별 재화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각 재화로부터 발생한 손실액을 타 재화로부터 발생한 마진에서 상쇄할 수 없으나, 포괄적 마진과세제도 하에서는 상쇄 가능

〈표 II -11〉 포괄적 마진과세제도 적용 예시

과세기간 1		
(a)	보유재고의 총매입가격	£10,000
(b)	판매된 재고의 총매입가격	£2,000
(c)	총판매가격	£8,000
(d)	마진=c-(a+b) =£8,000-(£10,000+£2,000)	(£4,000)
과세기간 2		
(a)	직전 과세기간의 손실	(£4,000)
(b)	판매된 재고의 총 매입가격	£1,000
(c)	총판매가격	£7,000
(d)	마진=c-(a+b) =£7,000-(£4,000+£1,000)	£2,000
(e)	부가가치세액=마진(£2,000)×1/6	£333.33

자료: HMRC, "Notice 718 The VAT Margin Scheme and global accounting," March 20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2012에서 재인용

5) EU 역내 국가 간 공급거래에 대한 마진과세제도

- 재화의 EU 역내 공급에 대해서는 도착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마진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발지 국가에서 과세
 - 다만, 신규 운송수단(new means of transport)은 어떤 경우이든 도착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EU 역내 국가로부터 매입하거나 다른 EU 역내 국가에 판매하는 신규 운송수단은 마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마찬가지로 영국 사업자가 EU 역내 국가에 중고품 등을 공급하는 다음의 경우에도 마진과세제도 적용 가능
 - ① 영국 사업자가 EU 역내 국가의 개인에게 중고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② 영국 사업자가 EU 역내 국가의 사업자에게 중고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6) EU 역외 국가와 거래에 대한 마진과세제도

- EU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중고품 등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마진과세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 수입자는 총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고 수입 시 부담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
 - 다만, 특정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 및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해서는 마진과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으로서 수입 시 부가가치 감액평가(reduced valuation) 대상인 것
 - 영국은 특정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의 수입에 대해 통상적인 과세표준의 25%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있는데
 - 이는 감액평가 대상이 되는 예술품이 5%(=감액률 25%×부가가치세율 20%)의 경감세율로 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
 - 사업자가 사업상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unconnected person)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

- EU 역외 국가에 공급되는 중고품 등은 다른 재화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영세율이 적용

다. 독일

- 독일은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이하 UStG) 제25a조에 근거하여 중고품 등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적용
 - 농산물 등에 대한 특례제도로서 농림업 거래에 대해 표준 부가가치세율(average rates, 이하 표준율)을 적용하며 음식료품에 대해 경감세율 적용

-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공급하는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적용

-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준수하므로, 독일의 마진과세제도는 전술한 영국의 마진과세제도와 대체로 유사

1) 마진과세 적용요건

- 마진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이동가능한 유형자산 (movable tangible goods)의 거래 또는 공매(public auction)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자²⁶⁾로서
 -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자(개인, 소규모 사업자, 또 다른 과세대상 중개업자등)로부터 중고품 등을 공급받을 경우
 -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중고품 등의 공급 시 마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 마진과세제도는 선택사항²⁷⁾

2)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

- 마진은 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다음과 같은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일 현재 해당 재화의 세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대체하고, 이러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가액을 판매가격으로 대체²⁸⁾
 - 사업 이외 목적의 재화 반출
 - 종업원 등에 대한 무상증여
 - 기타 소액증여(gifts of small value)나 견본품(sample)의 지급이 아닌 무상증여
-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마진} \times \text{부가가치세율}(1+\text{부가가치세율}) \\ \text{마진} &= (\text{판매가격}-\text{매입가격}) \end{aligned}$
--

26) UStG, Article 25a(1)1
 27) UStG, Article 25a(8)
 28) UStG, Article 25a(3)

3) 자료의 기록·보관

-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한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중고품 등의 판매가격, 매입가격 및 과세표준(마진)을 기록한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할 의무²⁹⁾
 - 만약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마진과세제도와 통상적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병행하여 적용할 경우 두 제도에 따른 과세자료를 별도로 작성·보관해야 함

-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한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그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할 수 없음

4) 기타

- 마진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EU 역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신규 운송수단(new means of transport)은 마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³⁰⁾

- 일정 과세기간 내 총판매가액에서 총매입가액을 차감한 총마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포괄적 마진과세제도의 적용을 허용³¹⁾
 - 다만, 총매입가액이 500유로를 초과하는 공급거래에 대해서만 포괄적 마진과세제도 적용 가능

라. 프랑스

- 프랑스는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이하 CGI) 제297A조~제297F조에 따라 중고품 등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적용
 - 농산물 등에 대한 특례제도로써 농어민 등에 대한 정률보상제도가 있으며,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

29) UStG, Article 25a(6)

30) UStG, Article 25a(7)(1)(b)

31) UStG, Article 25a(4)

- 영국, 독일과 같이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및 수집품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적용
 -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매입한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 시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인 마진을 과세표준으로 이용

□ 마진과세제도는 선택사항³²⁾

□ 중고품은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또는 귀금속 등을 제외한 유형자산(부동산 제외)으로 현상 그대로 또는 보수 후 추가적인 사용이 가능한 재화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중고품은 마진과세제도 대상 품목에 해당함

- 자동차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최소 6,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에 한해 중고품으로 분류함³³⁾
- 상기 중고품의 정의에 부합한 중고품의 경우 귀금속, 보석 등 예외적으로 적용 불가로 예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진과세제도 적용이 가능한 재화로 보임

□ 예술품의 경우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예술품의 매입가격을 알 수 없거나 매입가격이 원가(cost price)를 반영하지 못할 시에는 판매가격의 30%를 매입가격으로 간주하여 마진 계산 가능³⁴⁾

- 예를 들면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예술품을 매입한 예술가 등에게 매입가액 외에 일부비용을 보전했거나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 마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프랑스의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EU 역내 소재하는 자에게 중고품 등을 공급한 경우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 가능

- 중고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프랑스에서 과세가 이루어짐
- 마찬가지로 프랑스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마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EU 역내 사업자로부터 중고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출발지 국가에서 과세

32) CGI, Article 297C

33) F. Kauffmann, France - Value Added Tax, Topical Analyses IBFD(12.4.1. General margin scheme).

34) CGI, Article 297A(III)

- 포괄적 마진과세제도가 허용되므로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일정 과세기간 내 총판매가액에서 총매입가액을 차감한 총마진에 대해 부가가치세 산출 가능³⁵⁾
 - 포괄적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과세대상 중개업자의 매입가격이 판매가격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초과액을 차기연도의 매입가격에 가산함으로써 손실을 이월할 수 있으나, 손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허용되지 않음
- 마진과세제도의 적용을 신청하는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2년간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포기신청이 없는 한 적용기한이 2년 단위로 자동갱신³⁶⁾

마. 싱가포르

- 중고품(used goods) 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자는 ‘마진과세제도(Gross Margin Scheme)’를 이용하여 GST(Goods and Services Tax) 납부 가능³⁷⁾
 - 중고품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중고자동차·전자제품·가구·보석 등이 모두 포함
 - 사업용 자산의 처분과 같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의 중고품 판매에 대해서는 마진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마진과세제도 적용은 사업자의 선택 사항이며, 자신이 마진과세제도 적용 적격자라 판단되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도 즉시 마진과세제도 적용이 가능
- 중고품 중개업자가 다음과 같은 자로부터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고품의 마진에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GST 세액으로 납부
 - 개인 등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마진과세제도에 따라 당해 재화를 공급한 다른 중고품 판매업자

35) CGI, Article 297A(II)

36) CGI, Article 297B

37) GST Act Section 23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고 일반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GST = 마진 × (부가가치세율(7%)/(1+부가가치세율(7%)))
 마진 = 판매가격(GST 포함) - 매입가격

- 중고품의 판매가격이 구입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마진을 ‘0’으로 보아 납부세액도 ‘0’
 - 그러나 GST 정기신고 시 그 해당 품목의 양도가액도 신고

- 마진과세제도 적용 시에는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적은 일반 매출송장(normal sales invoice)을 발행
 - 공급자의 이름·주소·사업자 등록번호, 구매자의 이름·주소
 - 송장번호, 송장 작성일, 재고수불장 번호
 - 중고품의 세부사항, 세포함가격, 공급자 서명, ‘본 중고품은 GST 마진과세제도에 하에 공급되었다’라는 내용 기재

- 마진과세제도는 마진에 대해서만 GST를 과세하는 과세특례조항이기 때문에 매출 송장에 GST 표기도 불가능하고 중고품의 매입자는 GST를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일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마진과 상계할 수 없음

바. 스위스

- 스위스는 중고품과 농산물 등의 공급거래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
 - 중고품에 대해서는 과거 마진과세제도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도로 전환

- 2009년 부가가치세 개정 시 마진과세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과거 마진과세제도하에서는 개별 중고품의 판매 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개별 중고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서 상쇄할 수 없다는 문제³⁸⁾

- 2010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과세사업자가 사업영위 과정에서 재판매 목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중고품을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³⁹⁾
 - 중고품이란 단독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현 상태 또는 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재화⁴⁰⁾
-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중고품의 매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중고품 취득시점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율(8%)/(1+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 과세사업자는 개별 중고품 건별이 아닌 매입총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가능⁴¹⁾
 - 다만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⁴²⁾
 - 중고품 매입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대상일 경우
 - 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1만스위스프랑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절차 외에 별도의 보고절차를 거쳐야 함
 - 중고품을 수입한 경우
 - 공급받은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 중고품을 면세로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 재화의 매입가액이 매입시점 재화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사. 호주

- 호주는 중고품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마진과세 제도를 별도로 운영

38)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총마진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포괄적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거래의 손실을 다른 거래의 이익에서 상쇄하는 통로를 허용

39) MWSTG, Article 28.3

40)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Mehrwertsteuer(MWSTGV), Article 62

41) MWSTG, Article 63.1

42) MWSTG, Article 63.3

- 중고품매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재판매나 교환의 목적으로 중고품(second-hand goods)을 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special input tax credit)가 적용⁴³⁾
 - 중고품이란 ‘예전에 사용된’ 또는 ‘새로운 것이 아닌’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과거 어느 누구에 의하여 소유되었는지 유무를 불문
 - 시험용 재화도 중고품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최초 중고품의 가격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태로 중고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일환으로 이를 다시 재판매 하거나 교환을 할 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것
 - 중고품은 미등록 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뿐만 아니라, 등록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도 오로지 사적으로 사용된 재화의 경우에는 포함
 -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단순한 수리나 개조를 벗어나,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제조(manufacture)가 있는 경우
 - 당해 중고품을 과세로 혹은 영세율 거래로 매입한 경우 또는 수입한 경우
 - 당해 중고품을 영세율 거래로서 재판매하는 경우
 - 사적인 목적으로 자가 소비하는 경우

-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공급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할 의무
 - 주요 기록내용으로는 공급자의 성명 및 주소, 중고품의 수량 등 상세 명세, 구입일, 구입가격 등
 - 다만, 구입가격이 75호주달러 미만일 경우 이러한 의무 면제

-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은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
 - 현행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11임
 - 중고품의 구입가격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재판매가격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43) GST Act Sec 66-5

$$\text{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text{구입가격} \times \text{부가가치세율} / (1 + \text{부가가치세율})$$

- 특례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
 -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최종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해 공제해 주는 취지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중고품 매입규모 및 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따른 납부기준(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에 따라 다름
 - 중고품 매입가격이 3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매입시점의 과세기간에 공제
 - 발생주의 기준 사업자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산서를 수취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
 - 현금주의 기준 사업자는 대가 지불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
 - 중고품 매입가격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재판매 시점의 과세기간에 공제
 - 발생주의 기준 납세자의 경우 대금수령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
 - 현금주의 기준 납세자의 경우 재판매로 대금을 수취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시기를 매입시점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

- 중고품 매매 사업자의 경우 특례규정으로 포괄계산방법(global accounting method)을 이용 가능
 - 이는 부가가치세법 목적상 매 개별 재화의 구입에서부터 처분까지의 과정을 추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 적용
 -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중고품을 매입하여 이를 시점상 분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 특정 종류⁴⁴⁾의 중고품을 등록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매입하고 포괄계산방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로서, 구입금액이 1천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동 기준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중고품 취득가액 전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동일한 과세기간의 중고품 처분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중고품을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재고로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와 포괄계산방법 적용이 가능

아. 뉴질랜드

-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가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 중고품 공제(secondhand goods credit, 이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⁴⁵⁾
 - 중고품 공제 적용요건은 기본적으로 과세공급을 창출할 목적으로 중고품을 매입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기타 조건들은 다음과 같음
 - 중고품이 뉴질랜드 내에 있을 것
 - 공급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닐 것. 즉, 일반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
 - 공급자가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사적인 중고품의 공급이면 상관없음
 - 구입대가의 지급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을 것
 - 중고품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지불된 것을 의미
 - 다만, 중고품에는 임대차 계약하에 공급된 재화, 가축(livestock), 순금속(fine metal), 금·은·백금 등의 물질로 제조된 재화는 미포함
 - 토지는 중고품으로 분류 가능

- 중고품 공제금액은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
 -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율은 15%로 공제율은 $3/23(=0.15/(1+0.15))$

$\begin{aligned} \text{중고품 공제금액} &= \text{구입가격} \times \text{부가가치세율} / (1 + \text{부가가치세율}) \\ &= \text{구입가격} \times 3/23 \end{aligned}$

44) 비행기, 골동품, 가방, 선박, 전자재, 의복, 자동차 등

45) GST Act Section 2 and 20(3)

- 중고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던 재화가 수출이 되더라도 동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납부할 필요 없음
 - 다만, 수출 공급일로부터 28일 내에 그 재화는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고 수출되었던 조건으로 동일하게 재수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함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입 관련 세부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함
 - 표준 기록사항으로는 공급자 및 수취자의 이름, 주소, 구입일, 제품 및 서비스의 상세, 제품 및 서비스의 수량, 가격 등
 - 특히 거래금액은 영수증과 같은 관련 증빙 역시 보관해야 함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품 취득시점에서 과세공급에 사용될 분량을 추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상당액만큼 취득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적용
 - 매 과세기간마다 과세공급에 사용한 실제 사용량과 추정 사용량을 비교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조정
 - 그러나 실제와 추정 사용량의 차이가 10% 이하이면서 그 차이금액이 1천뉴질랜드달러 미만이거나, 매입가액이 5천뉴질랜드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절차 없음

- 만일 등록사업자가 특수 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제한을 두며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 적용
 - 중고품 공급자의 최초 취득원가에 포함된 실제 부가가치세액
 - 중고품 구입자의 구입가격의 3/23
 - 중고품의 공개된 현행 시장가치의 3/23

자. 일본

- 일본에서는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또는 소비세라고도 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제도를 채택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과세매입’의 증명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의 자체 기록과 장부보관이 필요

- ‘과세매입’이란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다른 실체’로부터 재화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용역을 구입(급여를 목적으로 한 근로는 제외)하는 것을 의미⁴⁶⁾
 - 여기서 ‘다른 실체’는 과세사업자만을 특정하지는 않음

- 일본에서는 마진과세제도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명목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세 재화인 중고품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임
 - 사업을 위한 구입이고 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이라면,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나 개인인 경우에도 ‘과세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⁴⁷⁾하고 있기 때문
 - 면세사업자나 개인에게 지불한 대가에 소비세(8%)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구입 가격의 8/1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재화 등을 실제로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

차. 소결

-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유럽국가와 싱가포르의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도입, 운영
 -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은 대부분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따르고 있어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마진과세제도가 매우 유사
 - 마진에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 마진과세를 적용하는 EU국가들은 마진과세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이나 손실 계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
 - 통상적인 자료 이외 추가적인 자료를 기록·보관할 의무(영국, 프랑스 등)
 - 마진율의 하락의 경우 마진율 조정(EU 지침)
 - 이러한 조치들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자와 마진과세 신고자와 세부담 측면의 차이를 방지하고자 노력

46) 소비세법 제2조 제1항

47) 소비세법 기본통칙 11-1...3

- 반면, 스위스, 호주 및 뉴질랜드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를 도입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매입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
 - 우리나라는 실제 부가가치세율(10%)보다 낮은 비율로 공제율을 설정하였으나 스위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공제율로 설정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되 시장 투명성 등을 반영하여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기반 누수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판단
 - 호주는 중고품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별 적용이 아닌 포괄적 계산방법도 인정
 -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고품 등의 취득시점에서 세액공제를 허용
 - 호주의 경우 중고품 매입가액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 중고품 매도시점에 세액공제를 적용

- 이상의 결과는 제도 유형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 부가가치세제가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과세사업, 면세사업자 등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암묵적 부가가치세액을 조정하여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강화된 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를 마진과세 선택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해소되지 않아 이로 인한 과세기반 누수를 정상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완
 - 거래가격 및 당사자에 대한 정보수집 미비로 인한 확인의 어려움, 일반사업자의 개인 등 비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회피 제어의 어려움 등

〈표 II -12〉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 비교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부동산)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0A조	부가가치세법 제25a조	조세일반법 제297A조~ 제297F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75장
적용대상 재화	중고품·예술품·수집품·골동품			중고품	과세대상 부동산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text{부가가치세} = \text{마진} \times \text{부가가치세율} / (1 + \text{부가가치세율})$ $\text{마진} = \text{판매가격} - \text{취득가격}$ (호주의 경우 마진= 부동산의 처분가액 - 취득가액)				
공제비율 (부가세율)	1/6 (20%)	19/119 (19%)	19.6/119.6 (19.6%)	7/107 (7%)	1/11 (10%)
개별자산에 대한 손실상계	불가				
포괄적 마진과세제도	허용(재화당 매입가격이 500파운드 이하인 경우)	허용(총매입가격이 500유로 이상인 경우)	허용	허용	규정 없음
포괄적마진 과세제도하에서 손실이월	이월 가능 (환급은 불가능)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	불가				

주: 1. 호주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중고품 등에 대해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싱가포르와 비교가 적절하지 아니하나, 참고 목적으로 추가함

2.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마진과세제도 규정은 모두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근간으로 하므로 제도의 내용이 대체로 유사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2012

〈표 II -13〉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 비교

	우리나라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2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	부가가치세법 제 66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20조 제3항
중고품의 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현 상태 또는 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재화	‘예전에 사용된’ 또는 ‘새로운 것이 아닌’의 개념이며 소유유무는 무관함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지불된 것을 의미함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매입가액×공제율	매입가액×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	매입가액×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	매입가액×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
공제율	3/103, 9/109 ⁴⁾	8/108	10/110	15/115
공제한도	있음 ¹⁾	없음	있음 ²⁾	없음
공제시기	취득시점	취득시점	취득시점 ³⁾	취득시점

주: 1)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의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

2) 일반적으로 한도가 없음. 다만, 300호주달러 이상 중고품을 취득하여 포괄계산방법을 적용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중고품 취득가액 전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동일한 과세기간의 중고품 처분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 한도규정이 존재함

3) 다만, 300호주달러 이상의 중고품 취득 시 판매시점에서 공제됨

4) 우리나라 공제율은 2016년 기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2012.

Ⅲ. 타당성 평가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운영이 정부 역할로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첫 번째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실제 부가가치세 운영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 이는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현행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특정 목적을 가진 지원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는 동 제도를 통한 정부의 정책목적이 정부 기능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 동 제도의 목적이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등에 비추어볼 때 정부 기능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

- 우선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부가가치세 운영원리 부합 여부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기존의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와 차이가 있느냐에 의존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기준한 부담을 산정하는 체계
 -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과 동일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의 합(「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매입세액의 산정에 있어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이는 자료상 등을 통한 매입금액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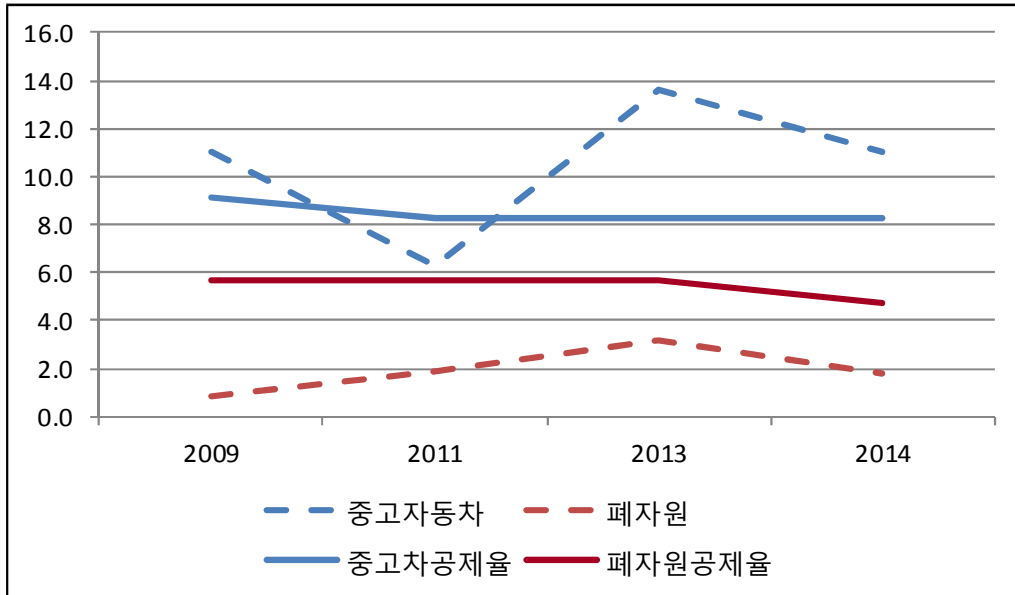
- 분석대상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매입세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특례
 - 즉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논리적 문제점은 없음
 - 유럽 등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마진과세를 통해 매입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료작성 요건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특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 완화조치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중고자동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결과에 따르면 전체 거래금액 4.1조원 중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금액이 11.1% 정도인 0.46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 다만, 이는 폐자원 및 중고차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간 정상적 거래를 회피하는 것도 포함된 결과
 - 거래당사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도를 설계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원리에 부합

- 두 번째 검토 포인트는 정책목적이 정부 역할로서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원리의 이행이라는 원론적 이유 외의 정책적 목적은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이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은 환경부와 중소기업청의 조세지출에 대한 자체평가서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그림 III-1] 중고자동차와 폐자원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증빙거래 비중



주: 증빙거래 비중은 사업자의 매입신고 자료 중 세금계산서 거래 비중(%)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환경부의 2015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조세지출평가서상 제도 목적
- “재활용폐자원의 수집·제조·가공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통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산업의 발전 도모”
-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폐지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저소득층에의 영향도 등 제도의 부가적인 역할

○ 중고자동차의 경우, 특별한 추가적인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활용 활성화라는 목적은 정부 개입의 목적으로 타당성 있음

- 실제 폐지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매립·소각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됨
- 재활용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매립·소각되는 폐자원의 양을 줄이고 자원소비를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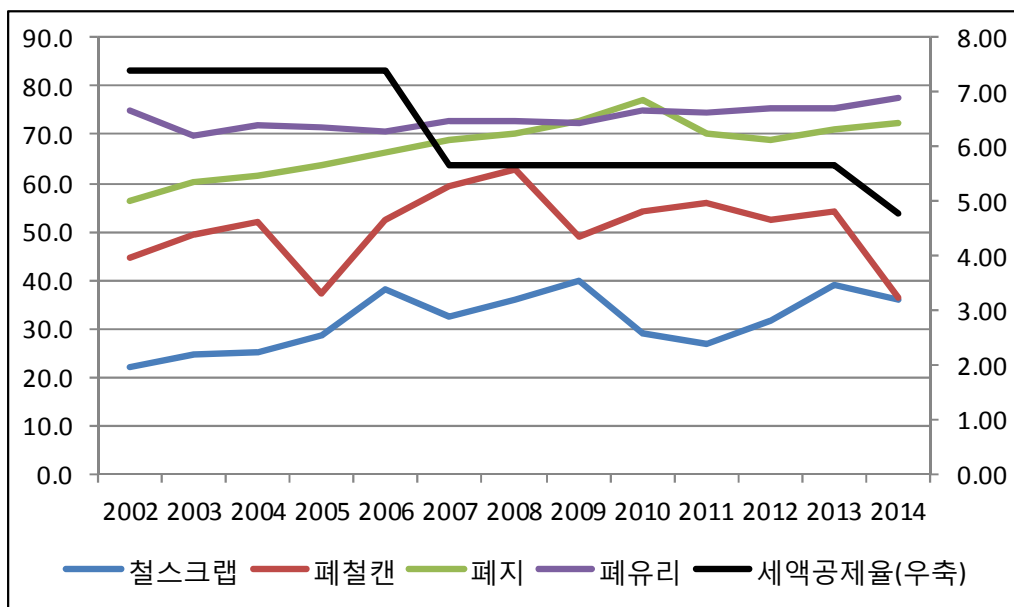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은 오염 배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배출·수거 및 폐기비용을 대체하는 효과 유발

- 즉, 폐자원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폐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거되고 폐기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과 대체관계에 있음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경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매입세액공제율과 폐자원 이용률과의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 매입세액공제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철스크랩과 폐지 이용률은 상승 추세⁴⁸⁾

[그림 III-2] 폐자원의 이용률과 매입세액 공제율 변화

(단위: %)



주: 각 폐자원별 국내 폐자원 이용률(%)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CO11&conn_path=I3), 2016. 3. 14 접속

- 전반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있는 제도
 -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라는 부가가치세의 원리를 거래상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제도
 - 동 제도를 통해 거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를 제거
 - 다만 거래 불투명성으로 인한 거래 왜곡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

48) 폐자원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다른 요인으로는 자원의 시장가격, 재활용관련 정책 등이 있을 수 있음. 재활용률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 자원가격은 동 기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0년 이후 급락하였고 재활용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재활용률 상승의 원인일 수 있음

2. 수행방법의 타당성

- 정부의 시장개입 방법의 타당성은 수단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수단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방법의 타당성은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정부의 시장개입 목적에 적절한 수단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은 현재의 지원대상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냐는 것에 대한 답변

- 먼저 정부 개입의 수단으로의 적절성은 개입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목적은 거래 상대방의 특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부담의 증가는 재화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어서 발생

- 거래구조의 특수성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제상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이용하는 방식은 적절한 수단의 선택
 - 현행 부가가치세제 구조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를 특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해소하고 있기 때문

- 다음으로 지원대상 설정에 있어 현재 재활용폐자원사업자와 중고자동차사업자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
 - 시장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지는 다른 사업자그룹이 있다면 이들과의 지원 우선순위에서 우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함
 - 매입부분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개인, 면세사업자 등과의 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농어업 등 일차 산업
 - 대표적인 분야는 중고품, 예술품,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입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포괄범위에 있어 중고품과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그 필요성이 중간 정도로 판단 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필요성은 필수 서비스인 음식관련 서비스와 자원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 지원 필요성: 면세 농수산물(음식), 재활용폐자원 > 중고자동차, 면세 농수산물(제조업) > 면세 예술품
 - 면세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필수적 재화를 공급하는 서비스로 세액공제로 인한 가격인하가 높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활용폐자원 역시 환경보호와 기존 쓰레기 관련 비용의 대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높은 분야
-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허용분야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I-1〉 재화별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품·폐자원	면세 예술품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	×	○
공제율	중고자동차: 9/109 재활용폐자원: 3/103	-	음식업: 4/104(유통) 6/106(일반) 8/108(개인사업자) 제조업(중소기업, 개인) : 4/104 기타: 2/102
지원 필요성	중고자동차: 중 재활용폐자원: 상	면세예술품: 중하	음식업: 상 제조업: 중 기타: 중하

주: 면세 예술품에서 골동품은 제외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4. 24 접속)

- 요율수준은 주로 시장거래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제도 도입 여부에서 반영되었고 그 외 대상 재화의 시장거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요율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져 옴
 - 구체적으로 시장의 거래행태에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거래 비중이 어느 정도 요율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상대적으로 높은 증빙거래 비율을 보이는 중고자동차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재활용폐자원은 낮은 세액공제율을 보임

-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공은 지원 필요성 측면에서 대상 설정에 문제가 없으나 공제율의 설정에 있어서는 향후 지속적 검토가 필요
 - 폐자원 재활용이 갖는 사회적 외부성을 공제율 결정과정에 반영할 필요
 -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야기할 수 있는 정상거래 관행의 훼손 측면을 반영하여 먼저 충실한 거래 투명화 시스템을 갖출 필요

가.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과의 연관성

- 중고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개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고 다시 이것이 중고자동차 사업자를 통해 세액이 환급되는 경로는 차단할 필요(거래유형 ②)
 - 부가가치세 행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개인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
 - 동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중간소유자 단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그림 III-3] 거래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거래유형	원소유자		중간소유자		중개인	부가세 부담
①	사업자	→	없음	→	중고사업자	사업자: 매출부가세 중고사업자: 매입세액공제
②	사업자	→	개인	→	중고사업자	사업자: 매출부가세 회피 중고사업자: 공제특례
③	개인	→	없음	→	중고사업자	개인: - 중고사업자: 공제특례

- 현재의 정상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 운용은 중고자동차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위축시킬 경제적 유인 내포
 - 현행 세액공제율 9/109에서는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동일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
 - 즉,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입하였다가 1,000만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영업이익은 0원이지만 매출부가가치세 부담 90.9만원(즉 10/110), 매입부가가치세액 공제 82.6만원(즉 9/109)으로 순 부가가치세 부담 8.3만원 발생

<표 III-2> 개인 중고자동차 매입 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사례

(단위: 만원)

	매입가격	매출가격	부가가치세
매입단계	1,000		-82.6
매출단계		1,000	90.9
합계	-	-	8.3

- 이러한 세부담 구조는 고급자동차 즉 매입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큰 부담이 되어 정상적인 중고자동차시장의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의안번호 제 2013-224호,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세금(지방세 포함)탈루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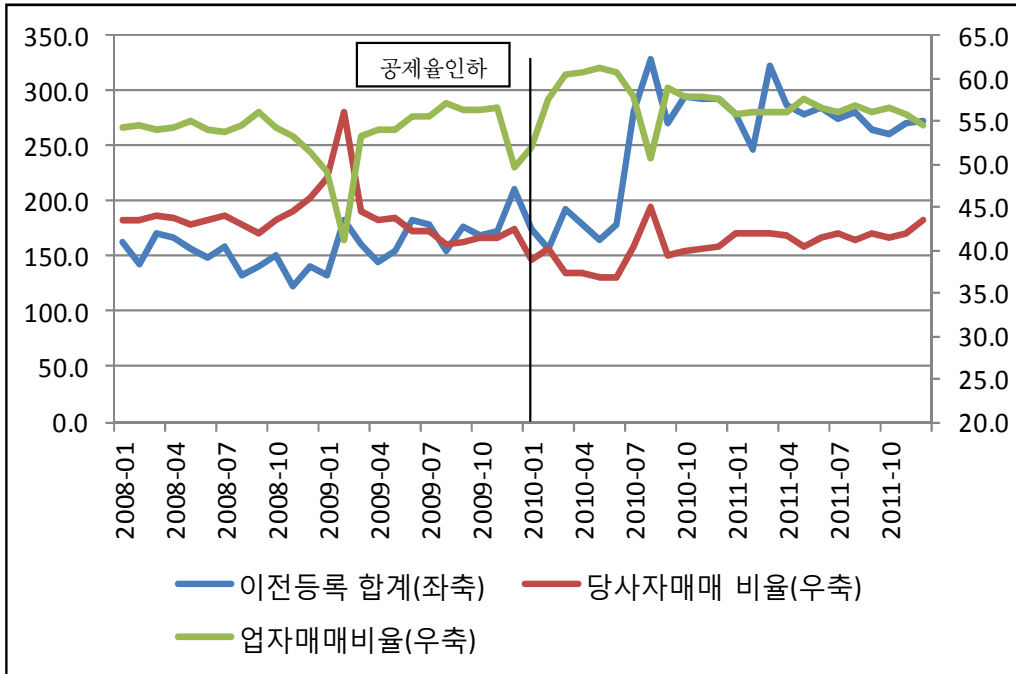
세금탈루의 대표적 유형

- 딜러가 매매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매매업체 대표 몰래 미등록 전매
- 딜러와 매매업체 대표가 공모, 세금 탈루를 위해 미등록 전매
- 카센터, 세차장, 자동차용품점, 할부사 등에서 미등록 전매
- 신차 영업소 직원의 미등록 전매 등

- 동 자료에 따르면 순수 당사자 거래는 전체 당사자거래의 약 10% 정도로 추산하였으며 나머지 90%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거래를 당사자거래로 위장⁴⁹⁾한 것
- 그러나 매입세액공제 특례율이 하향 조정된 2010년 1월 전후로 당사자매매 비율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점진적인 추세 변화를 관측할 수 있음
- 이전의 하락추세에서 점진적인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 매입세액 공제율 인하의 영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49) 「중고차 온라인 중개 사이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연구」(2011. 6.)를 인용

[그림 III-4] 매입세액공제율 변화 전후의 중고자동차 매매 패턴 변화



자료: 국토교통부

- 결국 증빙자료를 동반할 수 없는 거래유형에 대한 특례에 대한 평가는 거래관행의 변화 정도에 의존
 - 기존 거래관행에 큰 변화가 없다면 불안정한 매입세액공제로 인해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탈세유인을 자극하는 부작용
 - 이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부가가치세율과 일치시켜야 함
 - 반면 증빙자료가 없는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허용으로 기존 과세사업자의 개인 경유 위장거래를 촉진하는 문제도 존재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 특례율을 낮추거나 폐지하여야 함
 - 변화 정도의 상대적 크기는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 중고자동차의 당사간거래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세액공제율 상향이 당사간거래를 줄인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표 III-3> 중고차 당사자거래 비중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영향

(단위: 천대, %)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P> t
종속변수: 당사자거래 비중(%)				
총거래량	0.0198***	0.0073	2.70	0.008
세액공제율	2.3571**	1.0902	2.16	0.032
선형추세	-0.0751***	0.0111	-6.78	0.000
상수	21.3557**	10.6020	2.01	0.046

No. of Obs = 135(2005.1 ~2016.3)

Prob. > F = 0.0000

Adj. R-squared = 0.5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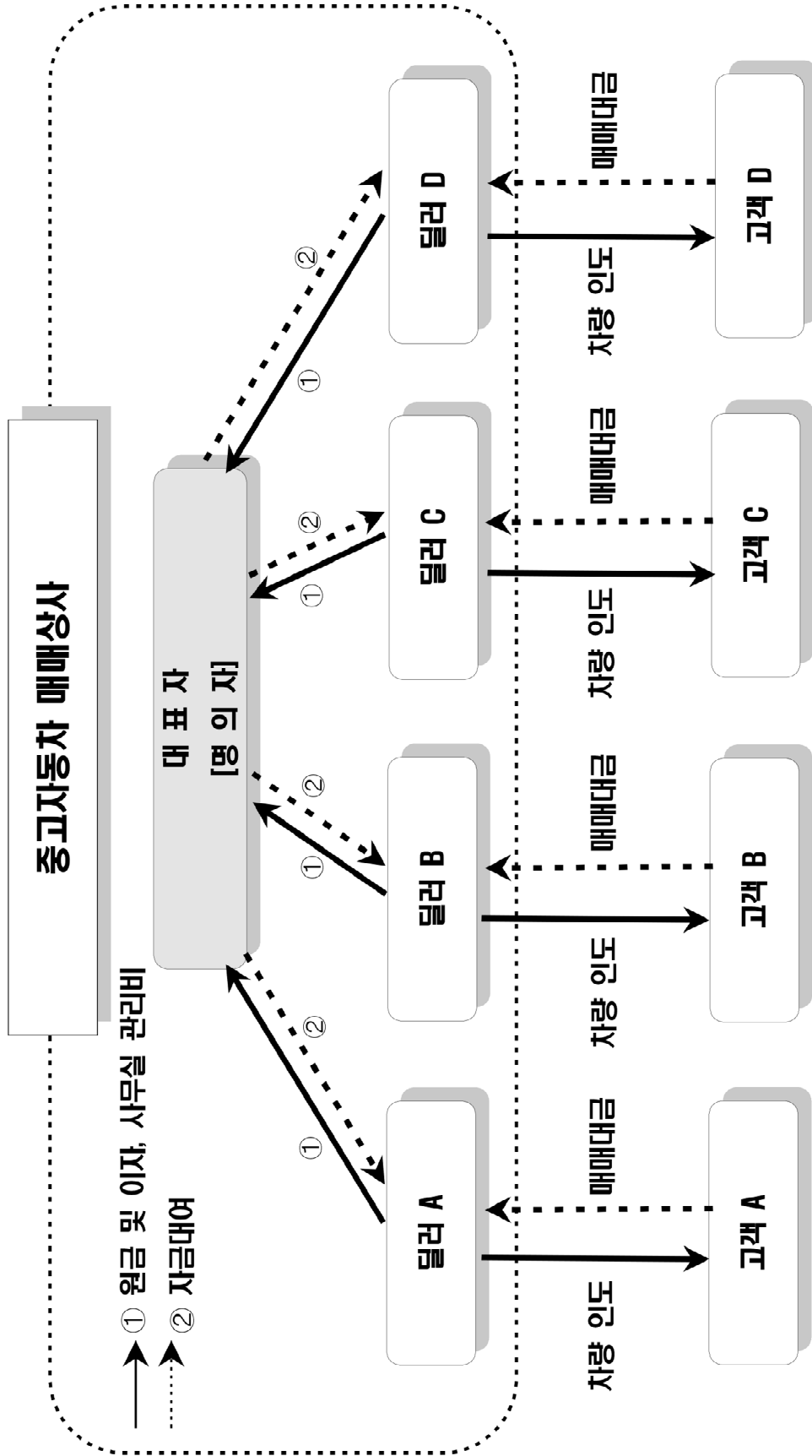
주: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 현재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은 중고자동차사업자(즉 매매상사) 중심이 아니라 독립적 개별 딜러들의 연합체와 같은 성격을 띠어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음
 - 개별 딜러들은 독립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거래하고 사업자에게는 자금유통 시이자 및 원금상환, 사무실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체제
 -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사업자도 딜러들의 중고자동차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⁵⁰⁾
 - 실제 자동차 이전등록시 요구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세 등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낮은 가격을 기입하여 실제 거래가격과의 괴리가 심한 문제 발생⁵¹⁾

50) 국세청 국세조사관 면담결과

51) 국세청 국세조사관 면담결과

[그림 III-5]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영업 실태



- 이러한 거래구조하에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거래구조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노력이 중요
- 따라서 거래행태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요율인상보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추진할 필요
 - 중고차 거래의 경우, 최초 이전등록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구체적으로 이전등록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날인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토록 하여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신고 의식을 높일 필요
 - 신고과정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더하고, 세무조사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기대
 - 딜러들을 사업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세금회피를 위해 또 다른 비사업자 딜러들의 연합체로 변화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 또한 신차 출고시부터 소유자 및 거래가격 기록을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사업자 소유 자동차의 개인 차명거래를 줄일 수 있음

나. 폐자원 거래 투명성과의 연관성

- 폐자원 거래는 개별적인 리어카 수집상 등 소규모 비사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 공장 등 대규모 발생처에서 직접 수집하는 형태로 변화
 - 과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경로의 변화가 발생
 - 고철 등의 유통경로
 - 과거: 영세수입업자(리어카 등) → 고물상 → 중상·대상 → 철강제조업
 - 현재: 고철 발생처(제조업 등) → 중상·대상 → 철강제조업

〈표 III-4〉 폐자원(고철)의 무자료거래 발생원인

발생처	비율	공급처	무자료 발생원인
제조업체 등	80%	도매상, 수집상	제조업 등 2~3차 밴드의 비자금 조성
생활폐기물	20%	수집상	비사업자, 소액거래

자료: 국세청 조사관 면담결과

-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거래당사자가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는 측면이 고려되었으나 실제 거래관행은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고철류까지 공제대상으로 변화
 - 폐자원의 발생단계에서 거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 필요
 - 거래 양성화에 유리한 사업체 발생 부분이 많은 폐자원부터 투명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예: 고철·비철 등

- 전반적으로 폐자원 거래의 투명성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기 어려운 실정
 - 시장거래구조의 변경에 정책 초점을 두면서 매입세액공제율은 부분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운용할 필요
 - 세액공제율 결정에 있어 폐자원 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폐기(매립)비용의 절감이라는 사회적 편익 고려
 - 재활용폐자원의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우선 시행할 필요

다. 마진과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 마진과세제도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는 역할
 - 마진과세제도는 마진(판매가격-매입가격)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를 일괄적으로 제거하여 부가가치세 원리를 실현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율을 하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원리 실현과 비정상거래에 대한 대응 목적도 함께 추구
 - 제도적용의 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효율에 대한 불만도 존재
 - 공제율을 10/110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동일

-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중고품 거래에 대해 각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와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운영
 - 유럽국가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와 싱가포르를 마진과세제도를 운영

- 따라서 마진과세제도의 도입 여부는 ① 우리나라의 상황과의 부합 여부, ② 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우리나라 상황과의 부합성은 다음의 관점에서 판단 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중에서 외국과 같이 중고품인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만 마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행정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가의 문제
 - 중고자동차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⁵²⁾ 마진과세로의 전환에서 어떤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점
 - 세금계산서를 동반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 시스템에서 중고자동차만 예외적으로 정상요율을 공제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점
 - 마진과세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 마진과세는 기존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과 다르므로 세무행정상으로 두 가지 과세방식을 운용함에 따른 복잡성 증가로 인한 행정비용,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비용 등 발생
 - 마진과세제도하에서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이용하므로 기존의 세금계산서 기반 근거과세 행정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 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입감소도 발생 가능

- 먼저 우리나라 상황과의 부합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함
 - 다양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항목 중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만 마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은 행정 및 제도운용의 복잡성을 야기하여 관련 비용이 상당할 것임

52) 국세청 신고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총마진은 2013년까지 적자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업자 수는 2009년 4,242개에서 2013년 5,267개로 증가하여 소득 및 비용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상황

-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 한 가지 제도를 더 운용해야 하는 부담
 - 중고자동차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어져 기존의 정상적 거래도 위축될 가능성 존재
 - 마진과세가 적용된 중고자동차를 산 사업자(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수취)가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다시 마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 투명성이 낮아질 가능성 높음
 - 그러면서도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마진과세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선택하여야 함
- 거래 투명성이 낮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마진과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대 편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진과세의 가장 큰 장점인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 제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님
 - 이미 거래가격의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차등록 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차령별 잔존가치에 따른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있어, 동일한 거래구조에 공제율만 높이 적용되는 결과
 - 특히 시장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제요율을 10/110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완전한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음
 -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지 거래 투명성이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 중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정상요율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음
- 개인, 면세사업자와 상당부분 거래한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고,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
- 마진과세로의 전환 시 부담할 전환 비용 또는 문제점도 상당
- 새로운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비용도 상당할 것이며, 마진과세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추가적인 거래 구분 등 납세준비용이 상당할 것임
 - 마진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급받게 되어 거래로 연관된 다른 사업자들의 투명성을 저해
 - 단순 요율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보다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세입감소도 발생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상황과의 부합성, 전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고자동차에 대한 마진과세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음
 - 오히려 중고자동차의 시장의 투명성 개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확인한 후 매입세액공제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인 대안

3.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정성

-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정성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운영원리를 반영하여 검토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적격증빙이 없는 다양한 거래 중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제한적으로 운영
 - 농수산물, 재활용폐자원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재화의 선정은 세금계산서 수수의 한계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 요율수준 결정 시에도 이러한 지원 필요성과 시장 투명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부가가치세 적용체계

-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각 생산단계의 부가가치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생산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도록 운용
-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방식을 보면 완전한 부가가치에 비례한 과세를 제도운영의 목표로 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로

-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매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이론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각 생산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정의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
 -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개념의 적용은 전단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납부세액의 계산과정에서 공제형태로 포함
- ②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개념의 적용 정도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정에서 세원 투명성, 기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차별화되는 체계
 - 세원 투명성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허용
 - 면세사업자, 개인 등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의 결정과정에 상당한 정책적 고려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 결국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체계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결정은 적격증빙이 없어 거래 투명성을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증빙 있는 거래에 적용하는 10/110의 요율, 즉 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과세원칙을 실현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

- 구체적으로 낮은 요율을 결정하는 근거로는 초기 공급된 재화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 등이 이용⁵³⁾
 - 이 경우, 매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실제보다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거래 불투명성으로 어느 정도 상계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경향
- 초기 요율 설정 이후에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다른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

□ 초기 요율 설정의 근거가 되었던 전 단계 부담 부가가치세의 관점에서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요율을 점점 가능

- 폐자원 등의 매입가격에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포함

53) 정책관련 담당자 면담에 근거

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폐자원 공급자가 동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구입한 원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

- 동시에 폐자원공급자 자신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인 및 면세사업자가 주로 공급할 경우에는 자신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음
 - 구체적으로 중고자동차, 폐자원의 공급자(개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가 동 상품의 공급을 위해 구입한 원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금액을 폐자원 사업자의 매입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할 수 있음

$$\text{매입부가가치세 비율} = \frac{\text{(매입 폐자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text{(폐자원 매입가)}}$$

- 폐자원 중에서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 두 종류 재화 모두 공급자가 부가가치 증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공급구조
 - 중고자동차 및 폐자원 공급자인 개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점도 동일
 - 그러나 중고자동차는 내구재로서의 수명이 남아있는 상품이고 재활용폐자원은 원생상품으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쓰레기로서 버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
 - 내구재로서 서비스 기능이 남아있는 상품은 그 이전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나 폐기물로 버려진 것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
- 이런 논리를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에 달하는 전단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시장가액이 0원인 상품이므로 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이 없거나 낮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판매한다면 재활용폐자원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될 수 있음
 - 수거용 차량 활용 시에 차량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등
 -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생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 높음

- 즉 노인 등 저소득층의 노동에 의존하여 수집된다면 그 비율이 낮겠지만, 아파트단지 등과의 계약을 통해 대량 분리수거하는 경우에는 수거용 차량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또한 버려진 쓰레기의 수거와 폐기라는 사회적 비용(개인, 지방자치단체 등 부담)과 대체관계에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
 - 즉 재활용폐자원의 (소매)거래가격⁵⁴⁾은 사실상 수거비용과 유사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유사한 개념
 - 따라서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가격 중 수거비용의 비중에서 사회적 외부성의 크기를 더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결국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매입 재화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정도와 함께 해당 재화의 거래 불투명성으로 인한 세수손실 가능성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논의에 앞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이런 관점에서 현 효율의 수준의 변경에 앞서 각 재화 거래시장에 대한 보완정책이 필요
- 중고자동차의 경우, 사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이 높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며 동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허용이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정상거래를 위축시키는 유인도 제공하는 문제
 - 기존 중고자동차 사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단계에서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거래 계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높이고 향후 부가가치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대응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었을 때,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즉 10/110)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임

54) 재활용폐자원 수집자(주로 개인)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에는 내재적 부가가치세액은 없으나 쓰레기 수거과정에서의 비용, 수거비용과의 대체성,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요율이 결정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배출자 비용⁵⁵⁾, 거래 투명화 정도 변화 등도 감안할 필요
 -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철스크랩에 적용되는 매입자납부제도의 성과를 검토한 후 가능 품목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결론적으로 현 요율을 유지하면서 거래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외부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화 시점까지 현 요율수준(9/109)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거래정상화 노력과 함께 향후 사회적 외부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

〈표 III-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율의 개선방향

상품 유형	현행	개선방향
중고자동차	9/109	- 거래과약 시스템 우선 개선 - 이전등록시 계약서 제출
재활용폐자원	3/103	- 재활용의 사회적 편익, 수거비용 부담비율, 거래 투명화 정도 등을 감안 - 현행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성과 검토후 가능 품목에 대해 확대 검토

4. 다른 재정사업 등과의 중복성

- 현재 부가가치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허용과 유사한 재정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조세지출 역시 유사한 목적의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규제와 부담금 등을 정책수단으로 활용

⁵⁵⁾ 2016년 3월 기준 쓰레기봉투 가격(20리터기준)은 431원(서울)-813원(부산) 수준(행정자치부, 지방물가정보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생산단계의 규제와 폐기물배출자들의 분리보관 등 배출단계의 규제를 함께 시행
 - 생산자에 대한 재활용의무율 제도도 운용
 - 재정정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용기 생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용 중
- 재활용촉진정책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
- 폐자원을 수집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동 제도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차적인 효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실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즉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매입가격)은 2015년 10월 기준 도매가격 대비 20.5%에서 최대 71.4%에 머물고 있으며,
 - 금액수준도 40원~70원/kg으로 소매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율의 조정으로 인한 가격 변화 여지는 매우 작은 수준
 - 매입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표 III-6> 재활용품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격차

(단위: 원/kg, 배)

재활용품	도매가격(A)	소매가격(B)	B/A
페트병	292	60	0.205
철스크랩	140	-	-
폐철캔	133	65	0.489
신문지	109	70	0.642
골판지	84	60	0.714
폐유리병	67	40	0.597

주: 가격은 kg 기준이며 시점은 2015년 10월 기준
 자료: 사단법인 한국자원재활용 협회

IV. 효과성 평가



IV. 효과성 평가

1.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정도

가. 폐기물 재활용률 일반 현황

- 국내 폐자원 활용도가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도입 및 공제율의 변화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재활용률에 대한 정의는 국내 폐자원 사용량을 (관련)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정의되는데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활용률의 분모가 아니라 분자인 국내 폐자원 사용량에 대한 것임
 - 국내 폐자원 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철스크랩은 2002~14년까지 연평균 9.8% 증가해 왔으며, 폐철캔은 1.2% 감소, 폐지는 3.3% 증가, 그리고 폐유리는 1.0% 감소하고 있음
 -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2007년에는 철스크랩은 전년도에 비해 12.7% 감소했지만, 다른 분야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또한 공제율이 6/106에서 5/105로 감소했던 2014년에는 폐철캔의 사용량이 3.3%나 급감하였으며 철스크랩도 미세하게 감소하였음
 - 폐자원 사용률 및 사용률의 증감 추이를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음
 - 철스크랩의 경우 2002~14년 동안 연 31.6%의 폐자원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폐철캔은 50.6%, 폐지는 67.7%, 그리고 폐유리는 73.4%의 폐자원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이를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해의 변화 여부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철스크랩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5.7%p 감소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견조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제율이 8/108에서 6/106으로 하락한 2014년의 경우 철스크랩은 3.3%p, 폐철캔의 경우 17.5%p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공제율 변화가 폐자원 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음

<표 IV-1> 국내 폐자원 사용량 및 증감률 추이

(단위: 톤/년, %)

	국내 폐자원 사용량				매입세액 공제율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2002	9,726,700	158,800	5,999,485	589,922	8/108
2003	10,579,000	182,100	6,610,658	539,669	8/108
2004	10,898,900	112,800	6,875,084	531,769	8/108
2005	13,110,100	116,100	7,085,813	576,653	8/108
2006	18,490,000	158,500	7,455,382	530,954	8/108
2007	16,272,000	173,000	7,997,886	545,432	6/106
2008	18,022,000	178,800	7,901,922	528,791	6/106
2009	19,230,000	128,000	7,851,054	485,673	6/106
2010	16,134,000	154,000	8,857,322	495,146	6/106
2011	18,324,000	132,000	8,826,637	534,587	6/106
2012	26,672,000	143,000	8,044,016	529,271	6/106
2013	25,862,000	150,000	8,646,300	491,412	6/106
2014	25,688,000	100,000	8,722,766	511,387	5/105
	국내 폐자원 사용량 증가율				
2002	-	-	-	-	
2003	8.8	14.7	10.2	-8.5	8/108
2004	3.0	-38.1	4.0	-1.5	8/108
2005	20.3	2.9	3.1	8.4	8/108
2006	41.0	36.5	5.2	-7.9	8/108
2007	-12.0	9.1	7.3	2.7	6/106
2008	10.8	3.4	-1.2	-3.1	6/106
2009	6.7	-28.4	-0.6	-8.2	6/106
2010	-16.1	20.3	12.8	2.0	6/106
2011	13.6	-14.3	-0.3	8.0	6/106
2012	45.6	8.3	-8.9	-1.0	6/106
2013	-3.0	4.9	7.5	-7.2	6/106
2014	-0.7	-33.3	0.9	4.1	5/105
평균	9.8	-1.2	3.3	-1.0	

<표 IV-2> 국내 폐자원 이용률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p)

	국내 폐자원 이용률				국내 폐자원 이용률의 증감률				매입세액 공제율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2002	22.3	44.7	56.3	75.1	-	-	-	-	8/108
2003	24.8	49.6	60.1	69.9	2.5	4.9	3.8	-5.2	8/108
2004	25.1	52.2	61.5	71.8	0.3	2.6	1.4	1.9	8/108
2005	28.7	37.1	63.9	71.4	3.6	-15.1	2.4	-0.4	8/108
2006	38.3	52.3	66.3	70.8	9.6	15.2	2.4	-0.6	8/108
2007	32.6	59.5	68.9	72.8	-5.7	7.2	2.6	2.0	6/106
2008	36.0	62.9	70.2	72.6	3.4	3.4	1.3	-0.2	6/106
2009	40.0	48.9	73.0	72.4	4.0	-14	2.8	-0.2	6/106
2010	28.9	54.2	77.2	75	-11.1	5.3	4.2	2.6	6/106
2011	26.7	55.7	70.0	74.7	-2.2	1.5	-7.2	-0.3	6/106
2012	31.7	52.6	69.0	75.3	5.0	-3.1	-1.0	0.6	6/106
2013	39.2	54.0	71.1	75.6	7.5	1.4	2.1	0.3	6/106
2014	35.9	36.5	72.4	77.4	-3.3	-17.5	1.3	1.8	5/105
평균	31.6	50.8	67.7	73.4	1.0	-0.6	1.2	0.2	

나. 매출 규모별 재활용폐자원 현황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체들의 규모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구분
 - 크게 재활용폐자원 업체와 중고자동차업체로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매출액을 중심으로 하여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로 구분하여 각 업체들의 평균을 조사

〈표 IV-3〉 업종별-규모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지동차사업자 현황(평균)

(단위: 백만원, %)

2009년	구분	매출금액	매출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경감공제 세액	재활용폐 자원금액	재활용폐 자원세액	영업마진	실효매입세액 공제율	명목공제율
재활용폐자원	하위30%	76.0	7.2	64.9	4.3	1.2	48.1	2.6	11.1	5.51	5.66(=6/106)
	중위40%	323.5	30.6	272.4	18.6	4.7	189.3	10.4	51.1	5.52	5.66(=6/106)
	상위30%	2,581.3	220.0	2,236.1	187.1	11.5	599.9	34.3	345.2	5.72	5.66(=6/106)
중고지동차	하위30%	87.0	7.8	92.3	8.4	0.7	64.2	5.7	-5.3	8.85	9.09(=10/110)
	중위40%	384.0	34.1	378.1	34.7	1.9	261.8	23.4	5.9	8.95	9.09(=10/110)
	상위30%	2,467.1	191.2	3,299.6	268.8	3.1	1,445.7	130.1	-832.4	9.00	9.09(=10/110)
2011년											
재활용폐자원	하위30%	92.8	8.9	80.0	5.2	1.4	59.8	3.2	12.8	5.40	5.66(=6/106)
	중위40%	401.6	38.0	339.3	22.8	6.4	238.9	13.0	62.4	5.43	5.66(=6/106)
	상위30%	4,288.0	307.9	3,646.6	258.0	16.6	714.8	38.1	641.5	5.33	5.66(=6/106)
중고지동차	하위30%	110.5	9.8	123.1	10.7	0.9	79.8	6.4	-12.7	8.04	8.26(=9/109)
	중위40%	486.1	43.1	500.1	43.5	2.7	333.1	27.1	-14.0	8.15	8.26(=9/109)
	상위30%	3,232.6	266.0	4,331.2	343.8	7.9	1,502.2	122.9	-1,098.6	8.18	8.26(=9/109)
2013년											
재활용폐자원	하위30%	78.3	7.5	68.6	4.4	1.3	51.6	2.8	9.7	5.35	5.66(=6/106)
	중위40%	319.2	30.1	273.1	18.3	5.1	192.6	10.4	46.1	5.41	5.66(=6/106)
	상위30%	3,941.6	260.1	3,311.7	233.3	11.4	579.0	31.6	629.9	5.46	5.66(=6/106)
중고지동차	하위30%	123.3	10.1	135.1	11.6	0.6	88.3	7.1	-11.8	8.06	8.26(=9/109)
	중위40%	571.1	50.4	587.9	50.9	2.2	396.5	32.3	-16.8	8.14	8.26(=9/109)
	상위30%	4,224.9	329.6	4,953.1	399.3	5.0	1,836.4	150.4	-728.2	8.19	8.26(=9/109)
2014년											
재활용폐자원	하위30%	78.4	7.5	68.4	4.0	1.7	51.8	2.4	10.0	4.58	4.76(=5/105)
	중위40%	306.6	28.7	264.3	16.4	6.3	183.5	8.5	42.3	4.66	4.76(=5/105)
	상위30%	4,089.6	264.3	3,328.6	229.2	18.8	531.7	25.4	761.1	4.78	4.76(=5/105)
중고지동차	하위30%	131.9	11.0	146.5	12.5	0.7	96.1	7.7	-14.6	7.99	8.26(=9/109)
	중위40%	614.8	55.1	642.4	55.7	2.6	431.1	35.1	-27.6	8.13	8.26(=9/109)
	상위30%	3,683.7	350.0	3,717.2	333.0	6.1	1,960.9	160.6	-33.5	8.19	8.26(=9/109)

<표 IV-4>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매출규모별 사업자 구성

(단위: 개)

	연도	2009	2011	2013	2014
	구분	사업자 수			
폐자원 재활용	하위30%	6,499	7,254	7,532	7,343
	중위40%	8,665	9,672	10,043	9,791
	상위30%	6,499	7,254	7,532	7,343
	전체	21,663	24,179	25,108	24,477
중고 자동차	하위30%	1,273	1,434	1,580	1,579
	중위40%	1,696	1,912	2,107	2,105
	상위30%	1,273	1,434	1,580	1,579
	전체	4,241	4,780	5,267	5,263

자료: 국세청.

- 재활용폐자원사업체의 매출규모를 중심으로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성하여 각각 30%, 40%, 30%의 비중으로 구분
 - 전체 사업자 수는 2009년 21,663개에서 2014년 24,477개로 증가
 - 2009년 평균 하위 30%는 6,499개, 중위 40%는 8,665여개, 상위 30%는 6,499여 개인데, 2014년에는 하위 30%의 사업체 수가 7,343개, 중위 40%는 9,791개, 그리고 상위 30%는 7,343개
 - 중고자동차 사업체의 규모는 2009년 4,241개에서 2014년 5,263개로 증가
 - 2009년 하위 30%의 경우 1,273개, 중위 40% 1,696개, 그리고 상위 30%는 1,273개에서 2014년 이 업체들은 각각 1,579개, 2,105개, 그리고 1,579개로 증가
 - 사업자 수 측면에서는 재활용폐자원사업자와 중고자동차사업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업상황이 호전되었거나 동 분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 있음

<표 IV-5>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1	2013	2014
폐자원 재활용	하위30%	76.0	92.8	78.3	78.4
	중위40%	323.5	401.6	319.2	306.6
	상위30%	2,581.3	4,288.0	3,941.6	4,089.6
	전체	2,980.9	4,782.4	4,339.1	4,474.7
중고 자동차	하위30%	87.0	110.5	123.3	131.9
	중위40%	384.0	486.1	571.1	614.8
	상위30%	2,467.1	3,232.6	4,224.9	3,683.7
	전체	2,938.2	3,829.2	4,919.3	4,430.4

자료: 국세청.

-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매출현황은 2009년중 하위 30%의 경우 7,600만원이며 중위 40%의 경우 3억 2,300만원, 그리고 상위 30%의 경우 25억 8,100만원이 평균 매출금액임
 - 재활용폐자원사업체들의 매출은 하위 30%의 경우 2014년에도 별 차이가 없지만 상위 30% 사업자들의 경우 2014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업자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경우, 2009년 하위 30%의 평균 매출액은 8,700만원, 중위 40%는 3억 8,400만원, 상위 30%는 24억 6,700만원이었음
 - 2014년의 경우 중고자동차사업자의 매출액은 매출분위별로 균등하게 50% 정도 상승하였음

<표 IV-6>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입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1	2013	2014
폐자원 재활용	하위30%	48.1	59.8	51.6	51.8
	중위40%	189.3	238.9	192.6	183.5
	상위30%	599.9	714.8	579.0	531.7
	전체	837.2	1,013.5	823.2	766.9
중고 자동차	하위30%	64.2	79.8	88.3	96.1
	중위40%	261.8	333.1	396.5	431.1
	상위30%	1,445.7	1,502.2	1836.4	1,960.9
	전체	1,771.7	1,915.1	2321.1	2,488.0

자료: 국세청.

-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해서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2011년 이후 하락, 중고자동차는 지속적인 상승추세
 - 재활용폐자원업체들의 경우 영세한 하위 30%의 경우 2009년 4,800만원에서 2014년 5,1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위 40%나 상위 30% 사업자는 2011년 이후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013년과 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중위 40%와 상위 30%의 재활용자원 금액이 크게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음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매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 매출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위 40%와 하위 30%의 매입금액이 상위 30%의 매입금액보다 증가율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남

〈표 IV-7〉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입세액공제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1	2013	2014
폐자원 재활용	하위30%	2.6	3.2	2.8	2.4
	중위40%	10.4	13.0	10.4	8.5
	상위30%	34.3	38.1	31.6	25.4
	전체	47.4	54.3	44.8	36.3
중고 자동차	하위30%	5.7	6.4	7.1	7.7
	중위40%	23.4	27.1	32.3	35.1
	상위30%	130.1	122.9	150.4	160.6
	전체	159.2	156.4	189.8	203.3

자료: 국세청.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액을 매출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경우 2009년 평균 4,7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2014년에는 3,6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매출규모별로 살펴보면 하위 30%의 경우 2011년과 2013년에 증가하였지만 공제율이 축소된 2014년에는 15% 감소하였으며, 중위 40%와 상위 30%의 경우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22~3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중고자동차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활용매입금액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액공제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0에 공제율 축소가 이루어졌지만 세액공제액은 커져 재활용매입금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IV-8>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 현황(전체)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1	2013	2014
	구분	매출액			
재활용폐자원	하위 30%	493,862	672,952	589,436	575,766
	중위 40%	2,803,481	3,884,154	3,205,741	3,002,237
	상위 30%	16,775,888	31,103,963	29,689,956	30,030,576
	전체	20,073,230	35,661,070	33,485,133	33,608,579
중고자동차	하위 30%	110,702	158,415	194,874	208,248
	중위 40%	651,295	929,472	1,203,257	1,294,369
	상위 30%	3,139,690	4,635,514	6,675,695	5,816,182
	전체	3,901,687	5,723,402	8,073,826	7,318,799
	구분	재활용폐자원 금액			
재활용폐자원	하위 30%	312,595	433,599	388,533	380,181
	중위 40%	1,639,894	2,310,664	1,934,486	1,796,490
	상위 30%	3,898,504	5,185,103	4,361,052	3,903,965
	전체	5,850,993	7,929,367	6,684,070	6,080,636
중고자동차	하위 30%	81,651	114,463	139,540	151,717
	중위 40%	443,939	636,922	835,268	907,463
	상위 30%	1,839,860	2,154,102	2,901,647	3,096,044
	전체	2,365,449	2,905,486	3,876,456	4,155,224
	구분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액			
재활용폐자원	하위 30%	17,221	23,402	20,776	17,428
	중위 40%	90,512	125,390	104,666	83,656
	상위 30%	223,146	276,139	238,289	186,727
	전체	330,879	424,931	363,731	287,811
중고자동차	하위 30%	7,224	9,203	11,248	12,123
	중위 40%	39,718	51,890	67,954	73,803
	상위 30%	165,534	176,197	237,717	253,500
	전체	212,476	237,291	316,919	339,426

자료: 국세청.

다. 폐기물 재활용률과 가격의 상관관계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로 인한 국내 폐자원 재활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폐자원 재활용률과 각 폐자원의 가격과의 상관계수를 분석
 - 재활용률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 폐자원 사용실적을 국내 총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각 제품가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집계하는 폐자원 (도매)가격을 사용
 - 각 폐자원 재활용 정도를 가격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볼 때 단순히 재활용률과의 상관관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재활용률의 변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내 폐자원 사용량과 가격, 국내 폐자원 사용량의 증가율과 가격, 그리고 재활용률의 증감률과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
 -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내용은 궁극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폐자원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는가 하는 것인데,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 혹은 매입세액 공제제도가 폐자원 (도매)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이것이 다시 폐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임
 - 상관계수 분석은 기초적인 통계기법으로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그 크기가 클수록 상관성이 높으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그 반대의 관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t-통계량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데 대략 2 내외의 값을 가지면 95%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상관계수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음

- 폐지 재활용률과 신문지가격의 경우 상관계수가 0.425, 골판지가격의 경우 0.387인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활용 폐지 사용량과 가격의 상관계수는 신문지가격의 경우 0.494, 골판지가격과는 0.521로 양 (+)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상관계수 또한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음
 - 폐지 사용량은 폐자원수집상(고물상)으로부터 재사용의 목적으로 구입되는 일종의 원재료에 대한 공급이며 가격은 폐자원수집상(고물상)이 이를 폐자원을 재처리/재사용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 가격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하지만 재활용 폐지 사용량과 가격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혹은 그것의 공제율 변동과 가격과의 상관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
 -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폐자원 가격과 매입세액공제율의 변동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폐자원 사용량과 가격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동에서 온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요인들, 가령 정부의 재활용촉진 정책, 경기상황 등에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 재활용폐자원 사용량의 증감률과 폐지가격들과의 상관계수는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매입세액 공제율이 하향조정되었던 2006~07년과 2013~14년에 재활용폐자원 사용량은 약간 증가하였고 재활용률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공제율의 축소가 재활용률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음

〈표 IV-9〉 폐지 사용량 및 가격의 추이와 상관계수

(단위: 톤/년, %, %p, 원/kg)

연도	재활용 폐지사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폐자원 사용량의 증감률	재활용률 증감률	신문지가격	골판지가격
2003	6,610,658	60.1	10.2	3.8	121	93
2004	6,875,084	61.5	4.0	1.4	133	104
2005	7,085,813	63.9	3.1	2.4	110	83
2006	7,455,382	66.3	5.2	2.4	94	67
2007	7,997,886	68.9	7.3	2.6	106	81
2008	7,901,922	70.2	-1.2	1.3	176	135
2009	7,851,054	73.0	-0.6	2.8	128	91
2010	8,857,322	77.2	12.8	4.2	181	152
2011	8,826,637	70.0	-0.3	-7.2	199	184
2012	8,044,016	69.0	-8.9	-1	151	106
2013	8,646,300	71.1	7.5	2.1	127	105
2014	8,722,766	72.4	0.9	1.3	114	84
상관계수1 [t-값]	0.494 [1.966]	0.425 [1.628]	-0.194 [-0.685]	-0.561 [-2.345]	-	-
상관계수2 [t-값]	0.521 [2.116]	0.387 [1.455]	-0.060 [-0.209]	-0.616 [-2.708]	-	-

주: 상관계수1은 각 변수들과 신문지가격과의 상관계수이며, 상관계수2는 각 변수들과 골판지가격과의 상관계수임.

자료: 통계청 및 한국환경공단.

□ 철스크랩⁵⁶⁾과 고철가격의 상관계수는 0.6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철스크랩의 재활용률과 철스크랩 사용량의 증감률, 그리고 재활용률 증감률과의 상관계수는 모두 음수로 나타남

- 매입세액 공제율이 하락하였던 2007년과 2014년의 경우 재활용률이 전년 대비 5.7%p, 3.3%p 각각 하락하였음
 - 이는 공제율 하락과 함께 철스크랩 사용량이 12.0%, 0.7% 감소한 것을 반영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폐지와는 다르게 철스크랩은 공제율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V-10> 철스크랩 사용량 및 가격의 추이와 상관계수

(단위: 톤/년, %, %p, 원/kg)

연도	철스크랩 사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폐자원 사용량의 증감률	재활용률 증감률	고철가격
2003	10,579,000	24.8	8.8	2.5	134
2004	10,898,900	25.1	3.0	0.3	168
2005	13,110,100	28.7	20.3	3.6	117
2006	18,490,000	38.3	41.0	9.6	117
2007	16,272,000	32.6	-12.0	-5.7	221
2008	18,022,000	36.0	10.8	3.4	347
2009	19,230,000	40.0	6.7	4	189
2010	16,134,000	28.9	-16.1	-11.1	299
2011	18,324,000	26.7	13.6	-2.2	385
2012	26,672,000	31.7	45.6	5	372
2013	25,862,000	39.2	-3.0	7.5	313
2014	25,688,000	35.9	-0.7	-3.3	260
상관계수 [t-값]	0.600 [2.599]	0.083 [0.287]	-0.062 [-0.215]	-0.238 [-0.850]	-

주: 상관계수는 각 변수들과 고철가격과의 상관계수임.

자료: 통계청 및 한국환경공단.

56) 철스크랩은 철강업 자체의 강제 생산과정 또는 철강수요산업의 철강재 가공과정, 철강제품의 사용 불능 상태 등에서 발생한 것을 수집과정을 통하여 회수한 후에 철강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철강의 잔존물을 말함. 철스크랩은 철광석, 원료탄과 함께 3대 제철원료로 전기로 제강공법에서 투입철원의 95% 및 전기로제강사 제조원가의 50% 차지하고 있어 철스크랩 수급 안정은 수요산업인 전기로 제강업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산업 발전의 주요 기반이 되는 것임. 과거 고철로도 불리었음(산은경제연구소(2011), 「신자원으로 주목받는 철스크랩산업의 동향과 전망」).

- 폐철캔 사용량과 철캔가격과의 상관계수는 0.111로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폐철캔 재활용률과 철캔가격의 상관계수는 0.606으로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았음
 - 하지만 이는 재활용률(=폐철캔 사용량/철캔 국내생산량)을 정의에서의 분자를 설명하는 폐철캔 사용량과 가격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지만 철캔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비율 자체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음
 - 실제 국내 철캔 생산량과 철캔가격과의 상관계수는 -0.435로 이러한 추론을 정당화하고 있음
- 따라서 폐철캔의 경우에서도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가격과의 상관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논리로 인해 가격과 재활용률 간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음

<표 IV-11> 폐철캔 사용량 및 가격의 추이와 상관계수

(단위: 톤/년, %, %p, 원/kg)

연도	재활용 폐철캔사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폐자원 사용량의 증감률	재활용률 증감률	철캔가격
2003	182,100	49.6	14.7	4.9	122
2004	112,800	52.2	-38.1	2.6	144
2005	116,100	37.1	2.9	-15.1	113
2006	158,500	52.3	36.5	15.2	114
2007	173,000	59.5	9.1	7.2	181
2008	178,800	62.9	3.4	3.4	281
2009	128,000	48.9	-28.4	-14	168
2010	154,000	54.2	20.3	5.3	235
2011	132,000	55.7	-14.3	1.5	310
2012	143,000	52.6	8.3	-3.1	278
2013	150,000	54	4.9	1.4	205
2014	100,000	36.5	-33.3	-17.5	-
상관계수 [t-값]	0.111 [0.386]	0.606 [2.640]	-0.096 [-0.335]	0.034 [0.118]	-

주: 상관계수는 각 변수들과 철캔가격 상관계수임.

자료: 통계청 및 한국환경공단.

- 폐유리와 재활용병가격과의 상관계수는, 우선 갈색병가격과 폐유리, 청녹색병가격과 폐유리는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며, 백색병과의 상관계수는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95%대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하지만 재활용률과 갈색 및 청록색 재활용병가격의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갈색 재활용병가격과 국내 유리병 생산의 상관계수가 0.284, 청록색 재활용병가격과 국내 유리병 생산의 상관계수가 0.415로 양(+)의 값을 갖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IV-12〉 폐유리 사용량 및 가격의 추이와 상관계수

(단위: 톤/년, %, %p, 원/kg)

연도	재활용 폐자원 사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폐자원 사용량의 증감률	재활용율 증감률	갈색병 가격	백색병 가격	청녹색병 가격
2003	539,669	69.9	-8.5	-5.2	45	62	39
2004	531,769	71.8	-1.5	1.9	51	54	40
2005	576,653	71.4	8.4	-0.4	52	50	42
2006	530,954	70.8	-7.9	-0.6	49	50	41
2007	545,432	72.8	2.7	2	43	50	39
2008	528,791	72.6	-3.1	-0.2	47	51	44
2009	485,673	72.4	-8.2	-0.2	48	56	46
2010	495,146	75	2.0	2.6	46	60	38
2011	534,587	74.7	8.0	-0.3	44	62	26
2012	529,271	75.3	-1.0	0.6	47	64	28
2013	491,412	75.6	-7.2	0.3	47	65	29
2014	511,387	77.4	4.1	1.8	47	65	29
상관계수1 [t-값]	0.200 [0.700]	-0.312 [-1.136]	-0.034 [-0.117]	0.092 [0.321]	-	-	-
상관계수2[t-값]	-0.493 [-1.960]	0.693 [3.329]	-0.017 [-0.060]	-0.053 [-0.185]	-	-	-
상관계수3 [t-값]	0.127 [0.444]	-0.745 [-3.864]	-0.338 [-1.244]	-0.150 [-0.526]	-	-	-

주: 상관계수1, 2, 3은 각 변수들과 갈색병가격, 백색병, 청녹색병가격과의 상관계수를 각각 나타냄.
자료: 통계청 및 한국환경공단.

〈표 IV-13〉 재활용 사용과 가격과의 상관계수 종합

(단위: 톤/년, %, %p)

종류	가격	재활용 폐자원사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폐자원 사용량의 증감률	재활용률 증감률
폐지	폐지가격	0.494 [1.966]	0.425 [1.628]	-0.194 [-0.685]	-0.561 [-2.345]
	골판지가격	0.521 [2.116]	0.387 [1.455]	-0.060 [-0.209]	-0.616 [-2.708]
철스크랩	고철가격	0.600 [2.599]	0.083 [0.287]	-0.062 [-0.215]	-0.238 [-0.850]
폐철캔	철캔가격	0.111 [0.386]	0.606 [2.640]	-0.096 [-0.335]	0.034 [0.118]
폐유리	갈색병가격	0.200 [0.700]	-0.312 [-1.136]	-0.034 [-0.117]	0.092 [0.321]
	백색병가격	-0.493 [-1.960]	0.693 [3.329]	-0.017 [-0.060]	-0.053 [-0.185]
	녹색병가격	0.127 [0.444]	-0.745 [-3.864]	-0.338 [-1.244]	-0.150 [-0.526]

자료: 통계청 및 한국환경공단.

2. 정부재정에의 영향

가. 조세지출 규모

- 최근 5년간(2009~14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추이를 살펴보면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3,518억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 이중 하위 30%의 경우 197억원, 중위 40%의 경우 1,011억원, 상위 30%의 경우 2,311억원을 세액공제받았음
 - 분석기간 중 특례 공제율이 축소된 2014년의 경우 2013년 대비 공제액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2,765억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하위 30%의 경우 584억원, 중위 40%의 경우 2,082억원, 상위30%의 경우 2,082억원을 공제받았음을 알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재활용폐자원사업자와는 달리 매입세액 규모가 매출규모별로 상관없이 점점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IV-14> 최근 5년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합계

(단위: 억원)

	매출규모기준	2009	2011	2013	2014	평균
재활용 폐자원	하위30%	172	234	208	174	197
	중위40%	905	1,254	1,047	837	1,011
	상위30%	2,231	2,761	2,383	1,867	2,311
	소계	3,309	4,249	3,637	2,878	3,518
중고 자동차	하위30%	72	92	112	121	99
	중위40%	397	519	680	738	584
	상위30%	1,655	1,762	2,377	2,535	2,082
	소계	2,125	2,373	3,169	3,394	2,765
전체	합계	5,434	6,622	6,807	6,272	6,284

자료: 국세청

나. 매입세액 공제율 변화에 따른 정부재정 영향 추정

- 향후 매입세액 공제율 변화에 따른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추정
 - 우선, 매입세액 공제액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추정액과 매입세액 공제율임
 -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은 국세청 자료에 나와 있는 2009~14년 동안의 5년 평균 증감률을 단순 연장하여 추정하였음

- 재활용폐자원 금액에 대한 2009~14년 증감률을 구하면 전체 -4.17%이며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상위 30%의 경우 9.21% 감소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체 11.40% 증가하였는데 중위 40%와 상위 30%의 증가율이 12%대를 기록

<표 IV-15> 재활용폐자원금액에 대한 2009-14년 증감률

(단위: %)

구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하위 30%	-3.67	9.84
중위 40%	-7.64	12.11
상위 30%	-9.21	12.03
합계	-4.17	11.40

- 아래 표는 위에서 구한 재활용폐자원 금액의 과거 5년 증감률이 2015~16년에 그 대로 적용된다는 전제를 통해 추정된 향후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 폐자원 재활용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 5,569억원에서 2019년 3,930억원으로 추정됨
 -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와 반대로 2015년 4,652억원에서 2019년 7,31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IV-16> 재활용폐자원금액에 대한 추정액 (2015~19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재활용 폐자원	하위 30%	366,217	352,765	339,808	327,326	315,303
	중위 40%	1,659,297	1,532,581	1,415,541	1,307,440	1,207,594
	상위 30%	3,544,264	3,217,705	2,921,235	2,652,080	2,407,725
	합계	5,569,778	5,103,051	4,676,584	4,286,846	3,930,622
중고자동차	하위 30%	166,647	183,045	201,057	220,842	242,574
	중위 40%	1,017,330	1,140,498	1,278,578	1,433,376	1,606,914
	상위 30%	3,468,362	3,885,454	4,352,703	4,876,142	5,462,528
	합계	4,652,338	5,208,997	5,832,339	6,530,360	7,312,016

자료: 국세청

- 향후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대한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는 3가지로 구성
 - 매입세액 공제율은 2016년까지는 지정해진 공제율이 적용되고 2017년~19년 기간 동안에는 현행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시나리오 1)와 2007~09년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는 경우(시나리오2), 그리고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2007~09년 수준으로 상향되고 중고자동차의 경우 현행 유지되는 경우(시나리오 3) 등의 세 가지 가상적인 상황을 고려
 - 이를 매출규모별로 추정한 후 부문별 합계를 구하고 이를 다시 업종별로 합해 전체 세수규모를 추정

<표 IV-17> 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1	현행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하여 연장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9/109)
시나리오 2	2007~2009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연장 (재활용폐자원: 6/106, 중고자동차:10/110)
시나리오 3	폐자원 활용은 상향조정 + 중고자동차는 현행 유지 (재활용폐자원: 2015~16년은 3/103, 2016년 이후 6/106 중고자동차: 9/109)

- 시나리오1 (현행수준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의 추정액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2015년 2,652억원에서 2019년 1,145억원으로 대폭 축소됨
- 중고자동차의 경우 2015년 3,841억원에서 2019년 6,037억원으로 증가
 - 시나리오2(2007~09년 수준으로 상향)에 따른 매입세액 추정액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2019년 2,225억원, 중고자동차의 경우 6,647억원으로 시나리오1보다는 양 부문 모두 증가
 - 시나리오3(재활용폐자원은 2007~09년 수준 상향 + 중고자동차는 현행유지)의 매입세액 추정액은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의 복합적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표 IV-18> 시나리오별 세수규모 추정

(단위: 억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A) 시나리오 1					
재활용폐자원	2,652	1,486	1,362	1,249	1,145
중고자동차	3,841	4,301	4,816	5,392	6,037
합계	6,494	5,787	6,178	6,641	7,182
(B) 시나리오 2					
재활용폐자원	2,652	1,486	2,647	2,427	2,225
중고자동차	3,841	4,301	5,302	5,937	6,647
합계	6,494	5,787	7,949	8,363	8,872
(C) 시나리오 3					
재활용폐자원	2,652	1,486	2,647	2,427	2,225
중고자동차	3,841	4,301	4,816	5,392	6,037
합계	6,494	5,787	7,463	7,819	8,262

3. 경제적 파급효과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인한 정책적 효과로는 동 제도가 재활용산업 종사기업들에게 주는 세제상의 특례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재무개선효과와 재활용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 발생과 재활용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산업파급효과 등이 있음
 - 우선,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매입세액 공제액만큼 해당 기업의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무개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재활용은 폐자원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아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옴
 -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환경적 편익을 분석하는 것은 환경가치 측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등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재활용사업의 환경개선효과를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상품-산업투입산출표(environmental commodity-by-industry table)가 필요하지만 이를 구할 수 없어 이를 다룰 수 없음(곽승준 외 (2002))
 - 마지막으로 재활용산업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장이나 처리시설은 폐기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물로 다른 산업을 증진시키거나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하는 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즉, 재활용사업의 수행은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원 재활용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함
 - 앞선 선행연구인 곽승준 외(2002)와는 다르게 자원재활용산업이 산업대분류 기준 30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 등 전통적인 산업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투입-산출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통적인 거시분석의 범위를 넘어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까지 분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한 방법을 제공함

- 투입-산출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 관계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으로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관련된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하므로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효과분석을 할 경우 유리함
-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자원재활용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Π_1)로 파악하고 이것과 동일한 특례규모⁵⁷⁾의 정부지출(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 등)에 의한 국민경제적 효과(Π_2)를 각각 구한 후 이의 차이($\Pi_1 - \Pi_2$)를 재활용폐자원 산업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경제적 순효과로 분석하고자 함
 - Π_2 는 정부가 재활용산업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모 100%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것인데 이를 50% 규모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현실적으로 특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 특례 규모를 감축시킬 때(예를 들면, 50%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frac{1}{2} \Pi_2$)와 Π_1 을 비교할 수도 있음

가.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투입-산출 분석⁵⁸⁾

- 산업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산업연관분석의 파라미터인 투입계수가 고정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고전적 가정에 따라 행과 열을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칭적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짐⁵⁹⁾
- 투입산출표를 행으로 보면 i 산업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및 총산출이 기록되는데 이는 i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줌(<표 IV-19> 참고)
- 본 연구는 자원재활용사업의 특성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들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게 되므로 국산거래표에 근거하여 투입계수 및 생산유발계수 등을 추정하기로 함

57) 만약 특례가 없었다면 축소된 비과세 감면규모만큼의 재정수입이 증가했다는 가정을 한 것임.

58) 투입산출분석의 방법론에 대한 소개는 한국은행(2015)의 내용을 요약 발췌함.

59)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을 기초로 이루어짐. 여기서 고전적 가정은 다음 네 가지를 지칭함. 첫째, 결합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 대 1의 대응관계에 있다고 가정함. 둘째,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상품에 대해 여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 셋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수준에 비례함. 넷째,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활동 결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결과와 같다는 가정임(한국은행(2015)).

<표 IV-19> 투입산출표의 형식(기초가격 기준)

		중 간 수 요					최 종 수 요	총수요	총 산출액 ¹⁾	수입	잔폐물 발생(+)	총공급
		1	2	...	j	...						
중 간 투 입	1	x_{11}	x_{12}	...	x_{1j}	...	x_{1n}	y_1		x_1	m_1	z_1
	2	x_{21}	x_{22}	...	x_{2j}	...	x_{2n}	y_2		x_2	m_2	z_2
	⋮	⋮	⋮		⋮		⋮	⋮		⋮	⋮	⋮
	i	x_{i1}	x_{i2}	...	x_{ij}	...	x_{in}	y_i		x_i	m_i	z_i
	⋮	⋮	⋮		⋮		⋮	⋮		⋮	⋮	⋮
	n	x_{n1}	x_{n2}	...	x_{nj}	...	x_{nn}	y_n		x_n	m_n	z_n
소 계												
순생산물세												
잔폐물발생(-)												
중간투입계												
부 가 가 치		v_1	v_2	...	v_j	...	v_n					
총 투입액		x_1	x_2	...	x_j	...	x_n					

주 : 1) 자가공정 산출액 포함
 자료: 한국은행(2015).

□ 투입계수의 산출

- 투입계수는 각 품목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해당 상품의 총투입액(=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 즉, 투입계수는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품목부문의 생산기술구조, 즉 투입과 산출의 생산함수를 의미함

○ 앞서 <표 IV-19>에서와 같은 투입산출표에서는 투입계수를 $a_{ij} = \frac{x_{ij}}{x_j}$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부가가치율은 $a_j^v = \frac{v_j}{x_j}$ 로 나타낼 수 있음

□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 투입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라 각 품목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임
- 즉, 투입계수를 매개로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생산의 크기를 생산유발효과라고 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생산유발계수임
- 품목부문 수가 많은 경우에는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과

급효과를 일일이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역행렬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게 됨

- 앞서 <표 IV-19>에서 각 품목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수입과 잔폐물 발생액을 차감하면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을 만들 수 있음

$$\begin{array}{cccccccc}
 a_{11}x_1 + a_{12}x_2 + \cdots + a_{1j}x_j + \cdots + a_{1n}x_n + y_1 - m_1 - z_1 & = & x_1 \\
 \vdots & & \vdots \\
 a_{i1}x_1 + a_{i2}x_2 + \cdots + a_{ij}x_j + \cdots + a_{in}x_n + y_i - m_i - z_i & = & x_i \\
 \vdots & & \vdots \\
 a_{n1}x_1 + a_{n2}x_2 + \cdots + a_{nj}x_j + \cdots + a_{nn}x_n + y_n - m_n - z_n & = & x_n
 \end{array}$$

단, a_{ij} : j 부문의 생산을 위한 i 부문 생산물 투입계수

x_{ij} : i 부문의 산출액 (자가공정산출액 포함)

y_i : i 부문의 최종수요

m_i : i 부문의 수입

z_i : i 부문의 잔폐물 발생액

- 위의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begin{bmatrix} a_{11} & a_{12} & \cdots & a_{1j} & \cdots & a_{1n} \\ \vdots & \vdots & \cdots & \vdots & \cdots & \vdots \\ a_{i1} & a_{i2} & \cdots & a_{ij} & \cdots & a_{in} \\ \vdots & \vdots & \cdots & \vdots & \cdots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j} & \cdots & a_{nn}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vdots \\ x_j \\ \vdots \\ x_n \end{bmatrix} + \begin{bmatrix} y_1 \\ \vdots \\ y_i \\ \vdots \\ y_n \end{bmatrix} - \begin{bmatrix} m_1 \\ \vdots \\ m_i \\ \vdots \\ m_n \end{bmatrix} - \begin{bmatrix} z_1 \\ \vdots \\ z_i \\ \vdots \\ z_n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vdots \\ x_i \\ \vdots \\ x_n \end{bmatrix}$$

$$\Rightarrow Ax + y - m - z = x$$

- 여기에서 A 는 투입계수행렬, x 는 총산출액 벡터, y 는 최종수요벡터, m 은 수입액 벡터, z 는 잔폐물 발생액벡터를 나타내며, 이를 x 에 대해 풀어 정리하면
- $x = (I - A)^{-1}(y - m - z)$ 와 같이 쓸 수 있는데, $(I - A)^{-1}$ 행렬을 생산유발계수라고 함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과정에서 역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이 이용되므로 역행렬계수라고도 함

□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도출

- 산업연관표에서는 공급능력이나 노동력 등은 충분하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최종 수요의 변동이 국내 생산의 변동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변동이 부가가치 변동의 원천이라고 간주
-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생산수준 간의 연관관계뿐 아니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 있음
- 부가가치 벡터를 v , 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을 \hat{A}^v 라고 하면, $v = \hat{A}^v x$ 가 성립하고 이를 생산유발관계식 $x = (I - A)^{-1}(y - m - z)$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v = \hat{A}^v (I - A^d)^{-1}(y^d - z)$ 의 식을 얻게 되는데 이 식에서 $\hat{A}^v (I - A^d)^{-1}$ 을 부가가치유발계수라고 함
- 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품목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냄

□ 노동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의 도출

-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반영하는 것이 노동유발계수임
- 노동유발계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계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 관계에 있음⁶⁰⁾
 - 노동계수가 클수록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크므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생산을 위하여 설비자동화 등의 투자가 늘어나면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작아지므로 노동계수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 산업, 곧 자본집약적 산업인 것을 나타냄
- 수식으로 표현하면 i 부문의 노동계수(취업계수)는 $l_i^{w*} = l_i^w / x_i$ 로 나타낼 수 있

60) 노동계수는 노동량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로 구분되는데,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한 노동계수는 고용계수라 하고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는 취업계수라고 함.

는데 여기서 l_i^w 는 취업자 수, x_i 는 산출액을 나타냄

- 노동유발계수는 각 부분의 노동계수를 주 대각요소로 하는 대각행렬을 \hat{L}^* 라 하고 이를 생산유발계수 $(I-A^d)^{-1}$ 에 곱한 $\hat{L}^*(I-A^d)^{-1}$ 을 노동유발계수라고 함
- 노동유발계수 행렬에서 i 열의 합계는 i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 할 때 i 부문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노동량을 의미 함

나. 분석결과

-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
 -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는 30개로 구성되며, 30개 분야에는 농림수산물, 광산물,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등이 포함됨
 - 이중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은 수도·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 재활용서비스 분야의 산업별 GDP는 2015년 11조 2,700억원이며, GDP 대비 비중은 0.68%(2000~15년 평균)이며, 2001~15년 기간 중 증가율은 6.93%로 GDP 증가율 6.19%보다 약간 높았음
-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재활용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우선 생산유발계수는 1.9128로 재활용폐자원 활용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1원 증가할 때 전 산업에 걸쳐 유발되는 생산액 합계는 1.9128원으로 추계
 - 이는 조세특례제도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생산의 측면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

<표 IV-20> 재활용산업 GDP, 증가율, 비중 추이(2000~15년)

(단위: 십억원, %)

	명목 GDP	재활용산업 GDP	비중	GDP 증가율	재활용산업 GDP 증가율
2000	635,184.60	4,157.60	0.65	-	-
2001	688,164.90	4,449.40	0.65	8.34	7.02
2002	761,938.90	4,795.20	0.63	10.72	7.77
2003	810,915.30	5,306.30	0.65	6.43	10.66
2004	876,033.10	5,873.00	0.67	8.03	10.68
2005	919,797.30	6,217.20	0.68	5.00	5.86
2006	966,054.60	6,356.10	0.66	5.03	2.23
2007	1,043,257.80	6,839.90	0.66	7.99	7.61
2008	1,104,492.20	7,408.20	0.67	5.87	8.31
2009	1,151,707.80	7,675.60	0.67	4.27	3.61
2010	1,265,308.00	8,860.20	0.70	9.86	15.43
2011	1,332,681.00	9,231.70	0.69	5.32	4.19
2012	1,377,456.70	9,846.70	0.71	3.36	6.66
2013	1,429,445.40	9,994.50	0.70	3.77	1.50
2014	1,486,079.30	10,447.10	0.70	3.96	4.53
2015	1,558,591.60	11,270.20	0.72	4.88	7.88
평균	-	-	0.68	6.19	6.9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54인데 이는 재활용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754단위임을 의미함
- 취업유발계수는 9.58명(10억원당)인데 이는 재활용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 10억 원이 발생할 경우 재활용서비스 부문의 직간접 유발인원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서 9.6명의 취업을 유발함을 나타냄
- 한편, 재활용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가 없을 경우를 전제하면 조세특례 규모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증가로 귀속되고 이는 정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지출(소비지출, 투자지출 등)의 유발계수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우선, 특례규모가 전액 정부소비지출로 사용될 경우 최종수요 중 정부소비 항목의 각종 유발효과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4956, 0.8641, 15.3472로 추계되었음

- 다음으로 특례규모가 전액 정부투자지출로 사용될 경우 최종수요 중 정부투자지출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2.1467, 0.7178, 13.4559로 추계되었음
 - 마지막으로 특례규모가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의 가중평균⁶¹⁾으로 사용될 때 정부지출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6381, 0.8321, 14.9312로 추계
- 각종 유발계수만으로 볼 때 폐자원 재활용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그 대상에 따라 달리 나타남
-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재활용폐자원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소비지출을 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투자지출을 통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을 혼합하여 지출하는 경우보다는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특례제도를 통한 재활용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투자지출보다는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특례제도를 통한 지원이 어떤 형태의 정부지출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21> 재활용폐자원서비스 분야의 유발계수 종합

분야	유발계수		
	생산	부가가치	취업
(A) 재활용서비스 분야	1.9128	0.754	9.5728
(B) 정부소비지출	1.4956	0.8641	15.3472
(C) 정부투자지출	2.1467	0.7178	13.4459
(D) 정부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	1.6381	0.8321	14.9312

주: 1. 이들 유발계수들은 <표 IV-23~IV-25>의 마지막 행을 재배열한 것임.
 2. 취업유발계수는 해당산업 최종수요 혹은 정부지출 10억원 증가시 취업유발인원을 의미함.

61) 2013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정부소비: 정부지출=0.78:0.22인데 이를 반영하여 각종 유발효과도 이 비중을 가중평균으로 하여 구한 것임.

- 재활용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경제적 평가와 아울러 동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의 편익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거래 투명화효과도 발생할 수 있음
- 먼저 동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 비용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데 가령, 재활용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의 총크기는 ‘생산유발계수×조세특례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와 동일한 정부지출효과 역시 ‘생산유발계수×정부지출규모’로 측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이 둘의 크기는 재활용서비스산업부문의 생산유발계수와 최종 정부지출의 생산유발계수 크기가 서로 달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를 폐지할 경우 자원재활용사업의 음성적인 거래가 활성화되어 지하경제로 유출되어 같은 규모의 조세수입이 반드시 환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정부지출을 통한 유발효과가 큰 경우 재활용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계수×조세특례규모’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정부지출 규모, 즉 조세수입으로 환수되는 비율을 구해볼 수 있음
- 아래 식에서 v_I 는 재활용서비스 분야의 유발계수이며 T 는 특례규모, v_G 는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그리고 κ 는 지하경제로 유출되는 비율로 정의하여 다음의 식이 성립하는 κ 를 구할 수 있으며 $(1-\kappa)$ 는 조세수입 환수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

$$v_I \times T = v_G \times T(1 - \kappa)$$

$$\therefore \kappa = 1 - \frac{v_I}{v_G}$$

- 위의 식 좌변은 조세특례로 인한 경제적 효과(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효과)이며 우변의 $v_G \times T$ 는 조세특례 대신 세수로 환수되어 정부지출로 사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이며 $(1-\kappa)$ 는 이 두 효과를 동등화시켜주는 비율이며 이를 편의상 조세수입 환수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에서 정의한 조세수입 환수비율 $(1-\kappa)$ 를 각 유발계수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구하면
 - 생산유발계수의 측면에서 조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조세수입으로 환수한다고 할 경우 89%의 조세수입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측면에서는 정부소비지출의 경우 87.3%, 정부지출의 경우 90.6%의 조세수입환수를 통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정부지출을 통한 취업유발효과가 훨씬 크므로 조세수입을 특례규모의 62.4%, 71.2%, 64.1%를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표 IV-22> 분야별 유발계수와 조세수입 환수비율

(단위: %)

분야	조세수입 환수비율($1 - \kappa$)		
	생산	부가가치	취업
정부소비지출	-	87.3	62.4
정부투자지출	89.1	-	71.2
정부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	-	90.6	64.1

주: - 부분은 정부지출을 통한 유발효과보다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유발효과가 더 큰 경우임.

<표 IV-23> 재활용폐자원서비스 분야의 유발계수

분야	재활용서비스 분야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045	0.002	0.1189
광산품	0.0012	0.001	0.0040
음식료품	0.0094	0.001	0.0277
섬유 및 가죽제품	0.0200	0.005	0.0876
목재 및 종이, 인쇄	0.0145	0.004	0.0707
석탄 및 석유제품	0.0489	0.003	0.0036
화학제품	0.0816	0.016	0.1090
비금속광물제품	0.0126	0.003	0.0317
1차 금속제품	0.1070	0.014	0.0867
금속제품	0.0170	0.005	0.0436
기계 및 장비	0.0504	0.014	0.1570
전기 및 전자기기	0.0258	0.007	0.0383
정밀기기	0.0095	0.003	0.0346
운송장비	0.0249	0.006	0.050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156	0.006	0.1124
전력, 가스 및 증기	0.0853	0.018	0.0659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0889	0.497	4.8427
건설	0.0034	0.001	0.0277
도소매서비스	0.0491	0.025	0.6718
운송서비스	0.0513	0.018	0.5737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204	0.008	0.347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287	0.012	0.159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58	0.018	0.1981
부동산 및 임대	0.0192	0.014	0.07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302	0.017	0.3411
사업지원서비스	0.0320	0.021	0.8447
공공행정 및 국방	0.0024	0.002	0.0212
교육서비스	0.0005	0.000	0.007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69	0.004	0.1016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160	0.008	0.3234
유발계수	1.9128	0.754	9.5728

〈표 IV-24〉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분야	정부지출 (정부소비+정부투자)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100	0.0054	0.2622
광산품	0.0023	0.0013	0.0076
음식료품	0.0166	0.0026	0.0491
섬유 및 가죽제품	0.0105	0.0024	0.0460
목재 및 종이, 인쇄	0.0153	0.0041	0.0746
석탄 및 석유제품	0.0313	0.0021	0.0023
화학제품	0.0679	0.0131	0.0907
비금속광물제품	0.0211	0.0058	0.0532
1차 금속제품	0.0529	0.0070	0.0428
금속제품	0.0360	0.0109	0.0923
기계 및 장비	0.0153	0.0043	0.0476
전기 및 전자기기	0.0334	0.0090	0.0497
정밀기기	0.0106	0.0031	0.0383
운송장비	0.0247	0.0056	0.0501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137	0.0057	0.0989
전력, 가스 및 증기	0.0379	0.0079	0.0293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132	0.0060	0.0588
건설	0.1648	0.0551	1.3258
도소매서비스	0.0525	0.0270	0.7190
운송서비스	0.0246	0.0085	0.2757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11	0.0116	0.530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309	0.0134	0.171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37	0.0173	0.1865
부동산 및 임대	0.0251	0.0186	0.09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539	0.0307	0.6090
사업지원서비스	0.0140	0.0094	0.3710
공공행정 및 국방	0.3905	0.3029	3.4097
교육서비스	0.1631	0.1190	2.461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2157	0.1101	3.1716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254	0.0125	0.5138
유발계수	1.6381	0.8321	14.9312

<표 IV-25>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분야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		
	생산	부가가치	취업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106	0.0057	0.2783	0.0078	0.0042	0.2045
광산물	0.0004	0.0002	0.0014	0.0088	0.0050	0.0296
음식료품	0.0185	0.0028	0.0546	0.0101	0.0016	0.0298
섬유 및 가죽제품	0.0105	0.0024	0.0462	0.0102	0.0024	0.0449
목재 및 종이, 인쇄	0.0129	0.0035	0.0630	0.0238	0.0064	0.1159
석탄 및 석유제품	0.0271	0.0018	0.0020	0.0462	0.0031	0.0034
화학제품	0.0611	0.0118	0.0815	0.0925	0.0179	0.1235
비금속광물제품	0.0028	0.0008	0.0070	0.0865	0.0238	0.2180
1차 금속제품	0.0139	0.0018	0.0112	0.1921	0.0256	0.1556
금속제품	0.0093	0.0028	0.0238	0.1314	0.0396	0.3369
기계 및 장비	0.0070	0.0020	0.0217	0.0450	0.0127	0.1400
전기 및 전자기기	0.0136	0.0036	0.0202	0.1043	0.0280	0.1551
정밀기기	0.0082	0.0024	0.0299	0.0188	0.0055	0.0684
운송장비	0.0085	0.0019	0.0172	0.0826	0.0186	0.1676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094	0.0039	0.0680	0.0289	0.0120	0.2089
전력, 가스 및 증기	0.0381	0.0079	0.0295	0.0371	0.0077	0.0287
수도·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144	0.0066	0.0639	0.0091	0.0042	0.0406
건설	0.0118	0.0040	0.0950	0.7111	0.2379	5.7195
도소매서비스	0.0398	0.0205	0.5445	0.0981	0.0505	1.3418
운송서비스	0.0190	0.0065	0.2123	0.0449	0.0154	0.50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45	0.0129	0.5879	0.0190	0.0071	0.3239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282	0.0122	0.1566	0.0403	0.0175	0.2239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06	0.0157	0.1692	0.0448	0.0229	0.2479
부동산 및 임대	0.0261	0.0193	0.0960	0.0216	0.0160	0.07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128	0.0073	0.1452	0.2003	0.1140	2.2648
사업지원서비스	0.0140	0.0094	0.3708	0.0141	0.0094	0.3719
공공행정 및 국방	0.4995	0.3874	4.3608	0.0016	0.0013	0.0144
교육서비스	0.2087	0.1522	3.1495	0.0004	0.0003	0.006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2747	0.1402	4.0395	0.0050	0.0025	0.0732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296	0.0145	0.6004	0.0101	0.0050	0.2048
유발계수	1.4956	0.8641	15.347	2.1467	0.7178	13.446

V. 결 론



V. 결 론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특례
 -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인 개인 등)가 공급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
 -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로 시장거래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상세율(10/110)보다 낮은 세율 적용
 - 특례대상 물품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금속캔, 폐합성고무,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폐의류), 폐유(폐식용유 포함), 그리고 중고자동차
 - 특례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 6,090억원 수준에서 6,732억원(2011)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5,248억원(2016 추정) 수준
 - 현행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9/109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타당성 존재
 - 유럽 등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마진과세를 통해 엄격한 자료작성 요건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다만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특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의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 완화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재활용 활성화라는 부차적인 목적도 정부 개입의 목적으로 타당성 존재
 - 폐자원의 재활용은 오염 배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배출·수거 및 폐기비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

- 매입세액공제율은 물품의 거래 투명성과 연계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거래 투명성의 변화추이를 반영할 필요
 - 현재 모든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요율인 10/110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와 동일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정상요율 적용 가능
 - 다만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쓰레기수거비용과의 대체성,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필요성 등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

- 대부분 폐자원의 재활용률 또는 재활용률 증감률과 가격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특례를 통한 가격지원이 폐자원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움
 - 또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실제 매입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보다는 매입자의 수익을 높이는 역할만 하였을 가능성 높음⁶²⁾
 - 또한 매입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가능성은 낮은 소매가격으로 인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특례제도 운영 시와 폐지 후 세입을 정부지출로 전환하였을 때 경제적 효과를 분석
 - 재활용폐자원 활용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활용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128,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54,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9.58명(10억원당)로 이중 생산유발 측면에서 동 특례제도는 그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임
 - 생산유발효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이 우위에 있는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정부 지출방식이 우위에 있음
 -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특례제도의 유지가 정부소비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만 정부투자지출보다는 덜 효과적이며,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특례제도의 유지가 정부투자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보다는 덜 효과적이며,

62) 사업자 심층인터뷰에서 확인

-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는 특례제도보다는 정부지출 효과가 더 우위
 - 조세특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조세특례 대신 세수로 환수되어 정부지출로 사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동등화시켜주는 조세수입 환수비율은 62~91% 수준으로 나타남
 - 즉 조세특례제도의 폐지 이후 추가되는 경제적 비용(예: 거래투명성 하락 등)이 9~38% 수준에 이른다면 조세특례제도 유지와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임
- 동 제도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은 거래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허용이 불가능
-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필요
 - 중고자동차는 거래과약 시스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거래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재 부동산 거래와 같이 계약서 제출의무를 통해 정상신고 유인 제고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성과를 검토하여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를 검토
- 한편 EU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은 ① 우리나라 상황에의 부합성, ② 전환과정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기상조로 판단됨
- 먼저 다양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중에서 중고자동차만 전환하여 정상요율을 적용하기에는 형평성과 부가세 행정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 거래 투명성이 낮은 상태에서 마진과세 전환이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고 현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
 - 또한 제도 전환과정에서 두 가지 제도 유지를 위한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이용함에 따른 거래 투명성 저하도 심각해질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매입세액 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있고 정책수단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경제적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에는 제도 변경보다 거래 투명성 제고 조치를 먼저 추진할 필요
 -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전등록시점에서 거래계약서와 함께 실거래가를 제출토록 강제할 필요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현행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성과를 검토하여 가능한 품목에 대해 확대를 검토
 - 따라서 공제요율 수준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며 향후 거래 투명화 개선정도, 폐자원의 경우 쓰레기 수거비용의 대체효과 등을 반영할 필요

참 고 문 헌

박명호·유지선·이형민, 『주요국의 의제매입세·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한국조세연구원, 2012. 6.

곽승준·유승훈·류문현, 「공공부문 자원재활용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자원·환경
경제연구』, 제 11권 제3호, 2002, pp.465-491.

산은경제연구소, 「신자원으로 주목받는 철스크랩산업의 동향과 전망」, 201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년.

한국환경공단(<http://www.keco.or.kr/kr/main/index.do>)

John W Darcy, *Japan Master Tax Guide 2014/15*, 2015

PwC, *The Swiss VAT Law*, the current law as of 2015.1.1.

TAN HOW TECK · JIMMY OEI, *Singapore Master Tax Guide 2014/15*, 2015

독일 법무부, http://www.bmjv.de/EN/Home/home_node.html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Schemes/GST/Gross-Margin-Scheme/#>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영국 법률정보 사이트, <http://www.legislation.gov.uk/>

프랑스 법률정보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

IBRD, www.ibrd.org

부 록



<부 록> 재활용폐자원 등 사업자 FGI 결과

□ 재활용폐자원 등 사업자에 대한 FGI

- 일시: 2015년 4월 15일 10:30~15:00
- 장소: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EMNA 7층 회의실
- 참석자: 폐자원사업자 등 6인, 중고차사업자 등 6인

가. 중고자동차사업자 답변서 요약

1. 응답자 개황

- 2004년부터 매매업 영위한 매출규모 년 8억원 사업자
- 2003년부터 매매업 영위한 매출규모 년 8억원 사업자
- 1998년부터 매매업 영위한 매출규모 년 5억원 사업자

2. 중고자동차시장 개황

- 국토교통부의 거래량통계 등을 보면 미미하게라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나 실제로는 매매사업자의 증가와 엔카 등 대기업 업체의 시장 잠식 등으로 평균적인 시장의 상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인이 소속한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의 경우 엔카, 유카 등 대기업 업체를 제외한 매매상사의 월 평균 거래대수는 20대가량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임.

3. 중고자동차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 매출부가세율인 10/110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로 인한 중복, 이중과세로 인한 위장당사자거래를 통한 시장의 이탈(음성거래)과 현실과 괴리가 있는 시가표준액으로 인한 탈세의 조장 등이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음.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일 때 위장당사자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증지세 등 탈루세액이 369,095,556,165원, 6/106일 때 709,284,915,411원으로 나타나 불합리한 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이 시장과 정부 세수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 수 있음.

4. 중고자동차 매입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기본적으로 차량의 상태와 그에 따른 상품화 비용과 소비자 선호, 평균적인 판매가격,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가 결정되며, 고정비용에는 부가가치세 등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려하게 됨.

5. 공제율이 10/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되는 이유

- 부과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측면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9/109를 적용하고 있는 형태지만 이것을 때 만 되면 현행보다 낮게 하려는 정책기조는 이를 증명하고 있음. 무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없음에도 고철, 폐지 등과 같이 폐자원 재활용으로 규정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매매의 전 과정이 이전등록제도를 통해 관에 신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전제로 임의의 공제율을 의제인정해 과세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세액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납세자인 매매업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혜적인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부임.

6.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매입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

-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7. 개인으로부터의 매입가와 일반사업자로부터의 매입가 차이

- 사업자에게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10/11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에게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공제율을 9/109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매출부가세에서 공제율만큼 차감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총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차액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실제 면담과정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진술)

8. 현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 매출부가세율(10/110)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로 인한 이중과세, 중복과세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당사자거래로 제도권에서 거래되어야 할 차량이 제도권 밖에서 거래되는 문제.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한 조세회피현상이 오히려

려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음. 매출부가세율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은 차량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해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생산된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측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차이기에 조세부담의 역진성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매출부가세율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그마저도 일몰제도를 통해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공제율을 축소조정하려는 것이 현 실정임.

9.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의견

-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에서 10/110을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제율 축소를 정부에서 시도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마진과세제도라고 알고 있음. 마진과세제도는 공제율의 축소, 일몰의 적용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공제율 10/110과 같이 불완전공제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9-1.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근거

- 매출부가세율이 10/110인 우리나라에서 매입세액공제율이 10/110 이하일 경우 이중과세,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제율을 현행 9/109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축소조정하려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일몰의 적용받아 매년 때가 되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조정 논란과 일몰 적용으로 인한 정부와 사업자들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매입세액공제율 10/110 적용과 같이 불완전 공제로 인한 이중과세,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조세정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마진과세 제도라고 생각함.

9-2.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영향

- 중고차 수출업자들의 경우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매출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제도를 통해 환급만 받

고 있음.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이 그 수입을 갖는 것임. 실질적으로 환급만을 받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수출하고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는 만큼 중고차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이중적인 수익구조로 볼 수 있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그만큼 싼 가격에 차량을 매집할 것이므로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10. 공제율 변화시 영향

- 매입세액 공제율이 10/110으로 변한다면 조세회피 현상을 줄이고 위장당사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 수 있어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활성화와 매매업자의 수익성 향상은 물론 세수익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전체 거래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당사자거래량의 80%를 위장당사자거래로 추정하는 현실에서 이 중 30%만 제도권으로 유도해도 사업자의 수익성은 20%이상 향상될 것임. 그러나, 9/109 미만으로 변할 경우 조세회피 현상의 심화로 인한 위장당사자거래가 증가하여 시장의 건전성 저해를 초래할 것임. 축소요율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과거 정부의 축소안이었던 5/105까지 축소한다면 수익성 저하를 논할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매매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보임.

나. 재활용사업자 답변 요약

1. 개황

- 1982년, 매출액 중상, 근로자 3명
- 1993년, 매출액 10억원, 2명
- 1989년 6월 5일, 매출액 90억원, 근로자 9명
- 2003년, 매출액 12억원, 근로자 5명
- 2013년 11월 6일, 매출액 14억원, 근로자 5명
- 2000년, 매출액 2억 5천만원, 근로자 1명
- 1992년, 근로자 4명
- 1997년 1월, 매출액 10억원, 근로자 2명(부부운영)
- 1998년, 매출액 8억원, 근로자 9명

2. 폐기물 재활용 시장 상황

- 최고의 불경기이며 발생량이 줄어 20년 전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음
- 경기불황으로 고철, 파지 등 재활용품 수거량이 50% 이상 감소한 반면 지난해(2015년) 이후 고철가격이 약 70% 하락하고 여타 재활용품가격도 동반 하락하여 우리 업소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수요초과
- 수요는 꾸준한 것 같지만 가격 하락으로 침체되었고 공급도 원활치 않은 상태
- 폐기물 재활용 품목이(전품목) 폭락으로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급도 원활하지 않음.
- 정책적 관심을 두지 않아 지역적 편차가 클 것임
- 수요초과, 과다경쟁
- 폐기물시장은 하향세이며 전망이 어두움
- 공급초과

3.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의 장애요인

- 발생자의 인식 부족과 유통의 수송비용 과다, 경기침체로 인한 발생량 부족
- 재활용품의 수거량 부족에 가격하락과 매입세액공제율 또한 10/110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금년도 3/103은 영업이익에 효과가 거의 없어 세금폭탄으로 재활용업체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 재활용제품의 인식 부족, 재활용품 수요 부족
- 무분별한 사업체의 과잉경쟁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폐업 발생시 대책 미흡. 수요와 공급에 비용 부담
- 높은 생산비용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하락하여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행정의 인식 부족과 각종 규제 및 지원 빈약으로 인한 장애
- 높은 생산비, 근로시간, 낮은 처우, 지원 부족, 인식 부족
- 경기도 나쁘지만, 소규모 자원보다 중소자원의 세무조항이 강화되어 너무 힘들.
- 부가비용 인상(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4.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의 목적에 대한 의견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매입 세액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4-1.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기여도

- 매입세액 축소로 현재는 기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에는 10/110, 중상인에는 6/106, 대상인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함.
- 매우 큰 기여
- 매우 큰 기여
- 매우 큰 기여
- 매우 큰 기여
- 매우 큰 기여
- 상당한 기여
- 상당한 기여

4-2. 공제율이 1/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되는 이유

- 2008년부터 재활용품 단가가 급상승하여 세수 감소가 심하여 줄어들게 된 것으로 봄.
- 재활용품(파지, 고철, 페트병 등)을 수집하는 노인이나 빈곤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법의 의거, 주민등록번호도 수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입세액공제율 10/110의 특별공제는 유지되어야 함
- 응답 없음
- 현격하게 낮음.
- 세무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 업계 단체의 힘이 미약하고 사업이 영세하여 요구(청원)할 여유가 없음
- 재활용업계에 대한 인식 부족, 법규 부족
- 소규모(동네 고물상)은 10/110을 할 수 있지만, 중간상인은 10/110보다 낮다고 생각함.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함.
- 너무 낮아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음.

5. 의제 매입세액공제가 매입량 증가와 수익개선 중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 폐기물 매입량 증가
- 수익성 개선
- 수익성 개선
- 폐기물 매입량 증가
- 폐기물 매입량 증가
- 수익성 개선
- 폐기물 매입량 증가/수익성 개선(둘 다이고 업계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폐기물 매입량 증가/수익성 개선
- 수익성 개선
- 폐기물 매입량 증가

5-1. 이유

- 경기침체로 발생량이 줄었는데 종사자 수는 유지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필요함
- 응답 없음
- 밑바닥부터 계산서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의 의제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의제 매입 서명을 통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연 매입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임
- 의제를 인정하면 매입량도 늘어날 것임. 세액 공제부분을 매입에 적용되므로
- 절차가 수월해지므로 누구나 쉽게 수거하며 수익성이 있으면 이직하지 않고 재활용사업을 영위함.
- 수집원(노인, 신불자, 파산자 등)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

- 대부분의 재활용품 수집은 현 빈곤층 또는 노인층이 주가 되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에게 하루 평균 만원도 안되는 수입에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
- 응답 없음
- 의제 매입세액공제가 높아져야 가져오시는 분이나 해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짐

6.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폐기물의 매입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국제가격의 폭락과 국내 발생량의 감소가 원인으로 세제지원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재활용 사업이 유지할 수 있음
- 국내경제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으로 재활용품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가격 폭락이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임
- 국내 폐기물 거래가
- 국제가격, 재활용 생산품 가격
- 국제 가격과 국내 폐기물 거래가
- 국내·외 시세에 따르지만 재활용 생산품 가격이 큰 영향
- 경쟁(자원수집소 간, 재활용업체 간) 대상들의 단합, 대기업의 관여
- 국내 폐기물 거래가(운송비, 인건비 등 마진폭이 너무 작음.)
- 납품받는 자의 단가에 운반비 빼고 작업비 빼고 단가가 형성됨. 폐기물 매입 단가에 감량이 쓰레기 값은 형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재활용 생산품가격

7.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폐기물 매입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 상당한 영향
- 조금 있다
- 전혀 영향 없다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조금 있다
- 조금 있다
- 상당한 영향
- 전혀 영향 없다
- 매우 큰 영향

7-1. 의제 매입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수익성 하락의 정도

- 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원을 증가시켜 수거하던지 환경부의 관리체계가 무너져 쓰레기 천국이 될 것임
-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 미발급(노인 등)으로 인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폐기물의 매입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함. 매입세액공제 폐지로 총영업수입이 10% 이상 감소되어 업소가 도산할 우려가 있음
- 재활용 생산품에 대한 회수율이 떨어지고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음. 마진이 떨어지니 수익이 안남.
- 상당한 영향을 줌. 연매출 대비 14억x35%=4억 9천만원
- 응답 없음
- 응답 없음
- 판매자가 매입자의 단가에 이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조정이 없으며, 상도덕이 없고 서로 편의도 없으며 메스컴에서 고소득으로 표현하고 세무서나 정부도 고소득으로 알고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하면 재활용 업체 거의 다 도산할 것임.

7-2. 3/103 요율의 영향의 정도

- 지금도 세제지원이 미약하여 도산할 사업자가 많이 늘어났으며 증가 추세임
- 현재 3/103 요율은 무의미한 것으로 10/110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일반재활용 업자(일반개인에게 의제)는 좋다고 생각됨.
- 그냥 매입자료라고 있는 형식적인 영향
- 거의 혜택이 없음. 세무당국의 간섭은 강화되고
- 너무나 미약함.
- 3/103은 매입가 결정에 영향이 없음. 10/110 정도는 되어야 다소 영향을 미침.
- 의미가 없을 정도임. 현행 정보통신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음. 그러나 여전히 매입은 빈곤·노약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매입근거를 증명하기 또한 너무 어려움.

- 폐업해야 한다고 봄. 직업이 있는 자나 소득이 있어도 신고 자체를 거부해 함
-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폐지 줍는 노인 분들한테 전가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

8. 2009~13년까지 매입세액공제율 6/106에서 2014~15년 공제율은 5/105로 축소됨

8-1. 공제율 축소가 재활용폐기물 매입량에 영향을 미친 정도

- 상당한 영향
- 조금 있다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보통 영향
- 조금 있다
- 상당한 영향
- 상당한 영향
- 매우 큰 영향

8-2. 공제율 축소가 귀 사업자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친 정도

- 상당한 영향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상당한 영향
- 상당한 영향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8-3. 공제율 축소가 재활용폐지수집 저소득층 노인이 받는 매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정도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조금 있다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 상당한 영향
- 상당한 영향
- 매우 큰 영향
- 매우 큰 영향

9. 현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 최초 수거체계가 무너지면 쓰레기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재활용품 가격 하락에 세금폭탄으로 업소는 도산하여 문을 닫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재활용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정부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에 별도의 공공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고 생각함
- 모든 분들이 파지나 캔, 금속류를 버릴 때 수거분들부터 계산서가 있어야 하나 세무서에서는 계산서가 의무다 보니 의제매입이 필요하다고 봄.
- 자원순환되는 폐자원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업종이고, 의제매입은 수거해 오시는 분들에 혜택
- 의제를 인정해주면 마진율이 오르고 매입 시 마진율이 적용되니 폐기물가격도 좋고 회수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됨.
- 특성상 매입자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
- 매입자: 영세업체, 취약계층
- 농산물이나 요식업이나 균형 있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
- 지속 유지 및 100분의 10으로 상향이 필요함. 실질적인 매입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임.

- 유지하면 폐기물 업체는 도산할 것임. 현 제도는 너무 힘들.
- 낭비되어 버려지는 순환자원의 원활한 재생을 위해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0. 현행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향후 개선방향

- 재활용 사업자는 세 단계가 있음. 최초 수거하여 유통하는 소사업자(고물상), 중간 유통하는 중사업자, 소사업자(고물상)에서 구매하여 제강회사나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자
- 현재 3/103 요율은 무의미한 것으로 10/110으로 조정하여 2020년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응답 없음
- 일차로 수거해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최대한의 혜택과 복지라고 생각함.
- 10/110, 그러나 마진과세제도도 관찰을 듯
- 특성상 부처의 인식을 고취시켜야 함.
- 타 산업계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야 함
- 인정과세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함.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통한 현 방법은 법끼리 충돌하는 모순이 있음.
- 현 제도는 소득을 세금과 연계 되지만, 업체는 소득과 연계할 수 없으므로 상당히 힘들. 직업을 이유로 구자료가 사용됨
- 응답 없음

10-1. 현행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한다면?

- 응답 없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의제 매입은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함

10-2.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면 필요한 기간

- 향후 5년 내에는 재활용품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까지 연장하고 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일몰기한을 최소한 2020년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재활용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됨.
- 2030년까지
- 일몰기한을 두지 않아야 함.
- 영세업체가 많고 폐자원 재활용의 환경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연장하여야 함.
- 타 산업계와 공동보조
- 법규가 완비될 때까지(재활용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 폐기물이 정당하게 단가가 형성되고 업체들이 상호간에 단가가 일정하고 고소득업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정당한 세금신고가 되었으면 함.
- 무기한

첨 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심층평가를 위한
Focus Group Interview(FGI)

본 설문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심층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 사업자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인터뷰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 명 : _____

소 속 : _____

연락처 : _____

1. 제도의 배경

- 동 제도는 재활용폐자원을 수집·제조·가공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 지원대상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재활용 사업자 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
 - 세금감면 규모는 5,248억원(2016 추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현황

- 공제대상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
 -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개인·면세사업자·비영리단체·폐업한 사업자 등
 - 간이과세자
- 조세감면 방식 및 감면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3/103
 - 공제대상: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금속캔, 폐합성고무,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폐의류), 폐유(폐식용유 포함)
 - 공제대상이 아닌 것: 폐목재, 폐건축자재, 폐밧데리, 폐합성섬유, 폐양초, 중고가전제품 등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9/109
 - 공제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표 1> 제도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8.12.28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2005.7.13	○ 중고품 취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조정 - 108분의 8 → 110분의 10
2006.12.30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 조정 -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공제 특례 허용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08분의 8 → 106분의 6
2010.1.1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10분의 10 → 109분의 9 ○ 일몰기한 연장(2009. 12. 31. → 2013. 12. 31.)
2014.1.1	○ 일몰기한 2016년까지 연장(중고자동차는 2014년까지)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 105분의 5: 2014. 1. 1. ~ 2015. 12. 31 - 103분의 3: 2016. 1. 1. ~ 2016. 12. 31
2014.12.23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특례 일몰기한 2016년까지 연장

<표 2>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정)	2016년 (추정)
부가가치세	6,090	6,732	6,653	6,494	6,547	5,780	5,24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폐기물재활용 사업자 설문

2-1. 언제부터 폐기물재활용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시작연도, 매출액 또는 근로자 규모 등

2-2.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재활용 시장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요초과(폐기물 수거량이 부족) 또는 공급초과(재활용품 수요 부족)

2-3. 폐기물재활용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가능)

예: 재활용제품의 인식 부족, 높은 생산비용, 재활용품 수요 부족 등

2-4. 재활용폐기물을 매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문 2-4-1번)

②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문 2-4-2번)

2-4-1. (① 답변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동 제도가 정책목적(폐기물 매입을 늘리는 것)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하지 않음	조금 기여	보통	상당히 기여	매우 큰 기여
①	②	③	④	⑤

2-4-2 (② 답변시) 부가가치세 행정상 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면 왜 매입세액공제율이 10/110보다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2-5. 현재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가 폐기물 매입량 증가 또는 수익성 개선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폐기물 매입량 증가
- ② 수익성 개선

2-5-1.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2-6. 폐기물의 매입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예: 국내 폐기물 거래가, 국제가격, 재활용생산품 가격 등

2-7.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폐기물의 매입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없다	조금 있다	보통 영향	상당한 영향	매우 큰 영향
①	②	③	④	⑤

2-7-1. 폐기물 매입가 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의제 매입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수익성 하락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2-7-2. 매입가 결정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3/103 요율의 영향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2-8.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입세액공제율 106분의 6에서 2014~15년 공제율은 105분의 5로 축소되었습니다.

2-8-1. 공제율 축소가 재활용폐기물 매입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전혀 영향없다	조금 있다	보통 영향	상당한 영향	매우 큰 영향
①	②	③	④	⑤

2-8-2. 공제율 축소가 귀 사업자의 수익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전혀 영향없다	조금 있다	보통 영향	상당한 영향	매우 큰 영향
①	②	③	④	⑤

2-8-2. 공제율 축소가 재활용폐지 수집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불하는 매입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전혀 영향없다	조금 있다	보통 영향	상당한 영향	매우 큰 영향
①	②	③	④	⑤

2-9. 현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2-10. 현행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제도도입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0-1 현행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대신에 마진의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한다면 동의하십니까?

* 마진과세는 매출액에 매입액의 차이로 결정되는 마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매입세액 환급이 없는 것이 특징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2-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면 언제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중고자동차사업자 설문

3-1. 귀하는 언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시작하였고 현 매출규모(또는 거래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3-2. 현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시장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장추세, 정체추세 등

3-3. 중고자동차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가능)

예: 높은 신차 선호 등

3-4. 중고자동차의 매입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 중고차 거래 가격 등

3-5.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제율이 10/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6.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중고자동차의 매입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없다	조금 있다	보통 영향	상당한 영향	매우 큰 영향
①	②	③	④	⑤

3-6-1. 중고자동차 매입가 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매입세액공제 폐지를 가정하면 수익성 하락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3-7.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에 적용되는 중고자동차 매입가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중고자동차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① 차이가 있다(→ 문 2-7-1번)

② 차이가 없다(→ 문 2-7-2번)

3-7-1. 만약 차이가 있다면 매입가격 격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결정됩니까?

3-7-2. 만약 차이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8. 현재의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3-9. 의제 매입세액공제의 대안으로 마진과세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마진과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진과세는 매출액에 매입액의 차이로 결정되는 마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매입세액 환급이 없는 것이 특징

3-9-1.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9-2. 마진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중고자동차 수출이 줄어들 것인데 그 영향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3-10. 만약 현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율 (9/109)이 변한다면 그 영향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까?

예: 사업자 수익성 향상 0%, 매입가격 상승, 영향 없음 등

